

自願奉仕活動의 活性化를
위한 立法方向

1994. 12.

연구자 : 김인재(선임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I. 머리말	5
II. 자원봉사활동의 이론과 과제	7
1. 자원봉사의 개념	7
2. 자원봉사활동의 이론적 기초	9
3.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입법의견	12
III. 외국의 법제와 관련제도의 내용	23
1. 미 국	23
2. 일 본	31
3. 영 국	36
IV. 여야당 법안의 주요내용과 분석	39
1.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지원입법의 필요성	39
2. 입법목적과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	44
3.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지원대상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종류	45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지원·감독기구	52
5. 자원봉사자의 등록·교육훈련·배치 등	58
6. 자원봉사활동 및 활성화와 관련된 재원의 확보	60
7.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과 사회적 보상체계	62
8. 자원봉사활동의 수칙	65
V. 결어 : 입법방향	67
『부록』 1. 여야당의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 대비표	73
1-2. 보건사회부의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100
2. 여야당의 민간운동지원에관한법률안 대비표	103
3. 기부금품모집금지법개정법률안	114
4.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	126

I . 머리말

인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회생활의 과정 속에서 서로 돋고 의존하며,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원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받고 있다.¹⁾ 다시 말하면 인간이 생활과업을 달성하고 만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에 대한 공동참여노력이 조화롭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인간의 생활과업의 달성을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문제이지만, 현대국가는 복지국가이념에 따라 이를 동시에 국가의 책임영역에 편입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개인의 책임과 능력만으로 모든 생활과업을 달성하기 어렵고, 또 국가가 다양한 인간생활의 모든 분야까지 책임지는데는 그 한계가 있다. 때문에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극복하는 방법으로 예로부터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요청되어 왔으며, 인간은 그러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삶의 보람과 자아실현의 길을 찾았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생활의 개인책임 아래에서도 복지국가이념에 따라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보장·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부조·사회복지제도가 제도화되어 있다.²⁾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를 실현하고 한편에서는 공적인 사회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하여 자원봉사활동이 매우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 그러던 중 근래에 들어와 이러한 국민의식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강조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 정당, 언론

1)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려면 여러가지 생활과업(Life Tasks)을 갖게 되고 그러한 생활과업은 여러가지 자원체계에 의존하게 되는데, 인간사회 초기에는 가정이 생활과업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체계였으나, 사회가 산업화·도시화·관료화됨에 따라 비공식적인 자연자원체계, 공식적인 회원체자원체계, 제도에 의한 사회자원체계 및 민간적 자발적인 자원체계 등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고 한다. Harriett M. Bartlett, *The Commons Base of Social Work Practice*, N.A.S.W., 1970 (金泳鎬, *自願福祉理論과 實際*, 弘益齋, 1992, 61면에서 재인용).

2)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사회보험제도와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등 사회부조제도 및 장애인, 노인, 아동, 편모자등의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제도 등.

3) 정무장관(제2)실,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정책자료 93-4), 1993.11을 참조.

기관, 기존의 자원봉사단체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나서서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화와 정책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여야당에 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른 것이다.⁴⁾

이하에서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법제도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가를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여야당의 법안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과 방향제시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자원봉사활동의 이론과 과제를 이해하여야 하고, 또 비록 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기초가 다르더라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의 법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민자당 남평우 의원의, 公益自願奉仕振興法案 (의안번호 932), 1992.11.21 및 민주당 박상천 의원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 (의안번호 964), 1994.12.1.

II. 자원봉사활동의 이론과 과제

전통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은 빈민, 부랑자 등에 대한 구빈·자선활동 및 隣保運動(settlement movement) 등과 같이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복지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발전되어 왔다. 때문에 오늘날에도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할 때에 주로 불우이웃돕기, 고아원·양노원 방문 등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문제가 빈곤·장애·소외 등 뿐만 아니라 국가·지역사회의 환경·범죄·질서·재해 등과 같이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청되는 사회문제의 영역도 한층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 및 주장자들의 의견도 바로 이런 현실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본적 개념, 대상·종류 및 접근방법론 등은 주로 전통적인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논해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설명되는 자원봉사활동의 이론적 설명도 주로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것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1. 자원봉사의 개념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voluntarism, voluntary service, volunteer, volunteer activity, volunteer organization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들을 우리 말로 적절히 구분하여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복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먼저, 「자원봉사(복지)」로 번역되는 voluntarism은 인류, 민족,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웃의 고뇌를 못본체 하지 않는 정신·활동으로서 인류와 민족과 지역사회의 역사 속에서 사람과 더불어 존재하여 왔으며 각각의 문화·교육·의료·사회복지 등의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그것은 주민편에서 개발되고 창조되고 제도화되고 사업화된 정신이었으며, 퇴폐와 비복지에 대항하여 이를 정화시키고 변혁시켜온 정신이며 실천활동인 것이다.⁵⁾ 때문에 보통 voluntarism을 사회복지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보다 넓게 “개인 자신이 선택한 자원봉사기관을 통하여 활동하고 창조하고 실험하고 또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려고 힘쓰는 과정으로서, 공동선(common good)의 어떤 요소를 증진 혹은 촉진하기 위하여 자

5) 김영호, 앞의 책, 13면.

발적·사적 노력에 의하여 나타나는 활동과 그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⁶⁾ 따라서 voluntarism이란 단순히 자원봉사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자발적 활동(voluntary action)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의 육성을 제1차적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voluntary organization)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된다.⁷⁾

voluntarism의 개념요소인 자원봉사활동(volunteer activity)은 “주는 자와 받는 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자혜심, 감상주의 또는 값싼 영웅주의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타인과 더불어 가치있는 활동을 함으로써 자기실현을 위한 하나의 기회인 것이다. 즉 자원봉사활동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 그리고 시간과 물질의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또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분야에서만 행해지는 활동 또는 자선·구빈활동만이 아니라, 인간성과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고 보완하며 지역사회를 회복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또 인간상호간의 공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인 것이다.⁸⁾

이와 같은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자원봉사자(volunteer)⁹⁾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volunteer란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의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통제하며 혹은 개선하는 일에 반대급부(보수·지위·명예와 같은 교환조건)없이 자발적으로 협력 또는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고 있다.¹⁰⁾ 또 자발적으로 조직되는 여러 단체중 공동선·공동복지를 지향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육성을 제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자원봉사단체(volunteer organization)라고 한다.¹¹⁾

이와 같이 자원봉사에 관한 용어와 개념이 다양하게 이야기되지만, 이하에서는 「자원봉사」 또는 「자원봉사활동」이란 “국가권력 내지 어떤 권위에 의해서도 지배되지 않고 또 개인의 가정내외에서 시민의 일원으로 통제없이 행해지는, 사회복지분야의 자선·구빈활동을 포함하여 인간성·가정·지역사회를 회복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성·자율성·상호성·연대성 그리고 창조성과 책임감을 갖고 무보수로 참여하는

6) Gorden Manser and Rosemary Higgins Cass, *Voluntarism at the Crossroads*, 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New York, 1976, p.11(김영호, 앞의 책, 14면에서 재인용).

7) 한편 자원봉사를 voluntary service라고도 하는데, 이 용어는 시간여유가 있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을 위하여 서비스하는 행위로 인식됨으로써, 기본적으로 민주사회·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관점에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voluntarism이라는 용어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김영호, 앞의 책, 19면.

8) 김영호, 앞의 책, 13면.

9) ‘volunteer’는 라틴어의 voluntas(自由意思)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기에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 “er”가 첨가된 복합어이다. 이 말은 “인류사회의 협조를 향한 인간개인의 자유의지”를 뜻한다고 한다. 張明根, ‘불룬티어’와 布施, 『법과 양귀비』, 화동, 1994, 266면 및 N.A.S.W., *Encyclopedia of Social Work*, vol.2, 1977, p.1582 (김영호, 앞의 책, 12면에서 재인용) 참조. 참고로 일본에서는 volunteer를 약간 동정의 뜻이나 연민의 뜻이 내포된 듯한 인상을 주는 「자원봉사(자)」보다는 그대로 「ボランティア」를 쓰고 있다.

10) N.A.S.W., *Encyclopedia of Social Work*, vol.2, 1977, p.1582 (김영호, 앞의 책, 12면에서 재인용).

11) 이 외에도 자원봉사단체·조직을 volunteer center, volunteer community center, volunteer bureau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김영호, 앞의 책, 15면.

모든 활동”이라고 개념정의하고,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자원봉사자」, 이러한 활동의 육성을 제1차적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자원봉사단체」라고 하기로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이론적 기초

(1) 자원봉사활동의 철학적 기초

오늘날의 자원봉사활동은 인간성의 상실과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해체에 대하여 공동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각자의 자율의지 혹은 자발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주체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인간존중의 정신과 상부상조의 정신·철학이 뒷받침되고 있다. 즉 자원봉사활동은 권력이나 외부의 강제에 의하여 하는 행동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웃과 공동체사회의 개선과 향상·발전에 책임을 느끼는 공동체적 유대감, 사회적 연대감, 이웃사랑 및 자기희생에 의한 자발적 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은 인간존중, 자유, 평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철학을 그 기초로 한다. 기계화, 제도화, 통제 등이 인간세계를 뒤덮고 있고 인간이 무력화 내지 비인간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간성의 회복·개발은 서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은 민주주의이념을 기초로 한 인간해방, 인간의 자기실현 혹은 자기창조 및 협동에 의한 공동사회발전을 위한 책임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²⁾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개발 특히 사회적 계획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사회적 참여를 그 기초로 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사회복지제도의 주된 목적은 전 지역주민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기실현을 위하여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조건을 정비하는 일”이라고 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에의 주민참여 혹은 주민개입의 문제를 그 중요한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다.¹³⁾

(2)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인간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위와 같은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1) 개인의 자기실현 및 사회적 승인 욕구의 충족

먼저 자원봉사활동은 자기실현 및 사회적 승인을 바라는 인간의 기본적 요구 그 자체이

12) 김영호, 앞의 책, 31면.

13) 김영호, 앞의 책, 32면.

며 또 그것을 충족시키는 기본적 방법이다. 인간에게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 때에는 욕구불만의 원인이 되어 건전한 인격형성에 문제가 됨은 물론 사회생활에 있어서 부적응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¹⁴⁾ 특히 개인의 여가시간이 증가한 현대사회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여가의 만족, 자기실현, 사회적 승인’ 등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정신적 안정과 자기충실감을 가질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여가를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 바람직한 인격형성, 범죄예방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며, 생의 보람과 희망을 갖게 한다.

2) 공동체사회의 재형성

한편,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지역간·산업간 인구이동은 기술혁신과 정보화사회의 진행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생활양식과 생활의식에 변혁을 초래하고 또한 생활의 자연적·사회적 환경을 악화시킴으로써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생활근거지였던 기존의 지역공동체를 해체시켰다. 민주사회와 복지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하여 인간성의 회복과 가정기능의 회복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의 재형성이 필요하며, 그것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복지성·자발성·연대성·책임성·무보수성 그리고 민주주의 철학을 가치로 삼는 자원봉사활동은 공동체사회의 재형성 내지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3) 가정복지수요의 증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으로 핵가족화의 경향에 따라 가족내에 있어서 노인·아동·장애인 등의 보호·보육능력의 감퇴를 들 수 있다. 즉 인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가족기능이 취약화된 현대사회적 현상으로부터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었다. 예를 들면 보육, 노인 및 장애인의 보호 등과 같이 과거에는 근린관계중에서 해결되었던 문제들이 오늘날에는 사회문제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 변화에 따른 가정복지문제는 금전이나 물질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對人的서비스(human service)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구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인 것이다.

4) 공적·제도적 서비스의 보완

오늘날 복지수요의 증대를 배경으로 하여 국가는 복지시설의 설치, 복지전문기관의 배치

14) 岡村重夫, 社會福祉學·總論, 柴田書店, 1978, 119頁 (김영호, 앞의 책, 68면에서 재인용)

및 연금급여 등에 대하여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하에 행해지는 소위 공적·제도적서비스에는 그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이나 생활보호등의 경제적 보호, 복지시설등의 설치에 의한 시설보호 및 치료, 보호, 간호 등의 전문적·인적 서비스의 보장 등과 같은 공적·제도적 복지서비스의 수요는 위에서 본 가정기능의 취약화와 공동체 사회의 해체 등과 같은 객관적 상황으로 인하여 앞으로 계속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적·제도적서비스체계에 의하여 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¹⁵⁾

(4) 자원봉사활동의 기능

위에서 언급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능을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¹⁶⁾

1) 시설복지의 보완기능

인간관계가 형식화되고 연대감과 상부상조의 공동체가 상실된 현대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탈락된 자들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복지시설입소가 있다. 이 복지시설은 사적인 생활이 존재하지 않는 집단생활이며 가정적인 분위기를 가질 수 없다. 시설직원들은 개별적인 서비스를 증대하고 또한 가정적인 체험을 갖도록 노력하지만, 그 시설직원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입소시설에 있어서의 자원봉사활동은 시설직원 및 시설입소자를 돋는 것과 시설사업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는다. 즉 시설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심리적·육체적인 노동부담을 덜어주어 서비스를 보다 능률적·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설입소자의 고독감을 덜어주고 올바른 인격형성과 사회적 재활 및 시설의 사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2) 가정복지의 향상기능

오늘날 사회복지의 노력은 시설보호 보다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며 모든 인간의 행복을 실현하는 장소로서 가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가족구

15) 이 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확충되지 않은 나라일수록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자의 과문인지도 모르겠으나, 선진국중 독일 또는 영국 보다 미국에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이에 대한 지원입법이 구비된 것은 미국이 영국·독일에 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후진국이라는 점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6) 柴田善守, 앞의 책, 168~172頁 (김영호, 앞의 책, 94~98면에서 재인용).

조, 의식체계 및 지역사회가 갖는 가치체계는 장애자 문제등에 대한 차별의식 또는 편견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노인·아동등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과 대화를 나눈다던가 돌봐준다든가 하는 가정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이와 같은 주민의 차별과 편견 및 이웃과의 단절을 없애고 복지문제의 예방과 함께 산다고 하는 연대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공동체사회형성의 기능

시설봉사활동과 가정봉사활동도 봉사를 받는자의 주체적인 생활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은 동시에 산업화·도시화로 붕괴되어가는 지역사회를 재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인간성의 회복과 가정기능의 회복·보완, 공동체사회형성을 통한 민주·복지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며, 사회의 비복지적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3.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입법의견

(1)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현주소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안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78년 창설)와 여성자원활동인력은행(1984년 설치), 대한적십자사 등 정부의 영향을 받은 단체들과 각 종교단체, 노인·여성·청소년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이 크고작은 순수민간단체들에 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이 행해졌으며¹⁷⁾, 많은 개인과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¹⁸⁾ 그러한 자원봉사활동은 주체면에서 국가에서 주관하는 자연보호운동 및 농촌일손돕기, 특수법인체인 대한적십자사의 봉사활동, 각종 종교단체의 활동 및 개인활동인 「사랑의 전화」 등 여러갈래로 행해지고 있으며, 또 대상별로는 크게 시설에서의 봉사와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이 행해지고 있다. 시설봉사도 양노원, 고아원, 맹아원, 재활원 등 그 종류가 많고, 봉사의 방법도 단순한 노력봉사 이외에 금전의 기탁, 전문기술·지식의 지원, 의사의 무료진료, 변호사의 무료법

17) 이강현, 자원봉사활동의 현황 및 발전방향,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세미나자료집, 1994.11.17, 5면.

18)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고 한다. 1993년 10월에 전국 6대 도시 남녀 15세 이상 인구 1,00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상황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활동자가 6.9%, 활동중 단자가 9.8%이고 나머지 83.3%는 무경험자로 나타났다. 이강현, 앞의 글, 5면 (조사자료는 정무장관(제2)실, 자원봉사활동의 실태 (정책자료 93-4), 1993.11을 말한다).

를 상담 등 해야 할 수 없이 많다.¹⁹⁾

그러나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 맞는 「더불어 사는 생활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이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즉, 어렸을 때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훈련이 덜되어 있어서 아직도 좀 어색하다는 것과 이러한 활동은 소위 독지가의 일이라는 편견, 명절때의 일과성 활동 그리고 도와준다는 잘못된 인식 등이 있으며, 또 봉사활동계획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도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몰라 본의 아니게 뜻은 있어도 활동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봉사활동에는 단순한 노력제공 이외에 재활원등에서의 봉사활동과 같이 사전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활동도 있으나, 이러한 활동을 위한 사전 자원봉사 교육·훈련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²⁰⁾²¹⁾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보건 및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보건사회부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안을 준비하였고, 급기야 정치환경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다른 부처와 정치권에서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안을 준비하였다. 또한 특정 언론기관의 대대적인 운동에 힘입어 자원봉사의 열기를 뜨겁게 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준비 및 각종 프로그램의 전개에 관한 주요일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1987년도 | 보건사회부에서 자원봉사진흥법안을 마련. |
| 1994. 7. 25 | 보건사회부, 자원봉사활성화의 법적근거 마련 발표 |
| 1994. 8. 21 | 여야당, 자원봉사지원입법 제정방침 발표 |
| 1994. 9. 4 | 보건사회부, 응급구조 자원봉사요원 활용방침 발표 |
| 1994.10. 1 | 전북·경북 교육청, 「도덕강화」프로그램 마련 |
| 1994.10. 22 | 서울시, 「시민자원경찰대」 첫 발족 |
| 1994.10. 31 | 인천시, 시민자원경찰대 발족방침 발표 |
| 1994.11. 16 | 민자당, 공익자원봉사진흥법안 마련 |
| 1994.11. 18 | 서울시 교육청, 98년도 고교입시에 내신·자원봉사활동만으로 전형 |
| 1994.11. 22 | 경찰청, 소년자원경찰대 95년 발족 발표 |
| 1994.11. 25 | 국무총리, 초중고 생활기록부에 자원봉사 포함, 내신반영 |
| 1994.11. 27 | 서울시, 자원봉사경력자 우선채용방침 발표 |
| 1994.12. 1 | 환경처, 자원봉사실적 근무평점반영방침 발표 |

19) 張明根, 앞의 글, 267면.

20) 張明根, 앞의 글, 267면.

21)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으로 국민의 의식부족, 관리기술의 부족, 정부지원의 미흡 및 제도의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강현, 앞의 글, 7면.

1994.12. 3 사법연수원, 연수생들에게 자원봉사의무화 발표

이외에도 대학에서 자원봉사·사회봉사를 교과목으로 채택한다거나, 자원봉사 전산망·정보은행을 구축한다거나, 행정부에서 자원봉사 경력을 임용·근무평가시에 반영한다거나, 기업에서 자원(사회)봉사단을 발족한다거나, 자원봉사의 날 행사 및 축제 등 민간을 막론하고 각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²²⁾

(2)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현행법령

우리나라 현행 법령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규정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혜택과 관련한 개별규정은 물론이고, 자원봉사활동에 규범적 의미를 부여하는 규정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물론 자원봉사활동이란 위의 개념에서 보았듯이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발적(voluntary) 활동으로서 입법이 강제하거나 금지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법령에서 무관심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사회봉사」 또는 「봉사」라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현행 법령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大韓赤十字社組織法 제7조(사업)제4호 : 의료사업·응급구호사업·자원봉사사업·이산가족재회사업·청소년적십자사업·관련교육사업 기타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 스카우트活動育成에관한法律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스카우트활동"이라 함은 스카우트육성방법에 의하여 청소년 및 소녀의 품성을 도아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유용한 기능을 체득하게 하여,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정신을 배양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나아가서는 세계인류의 친선증진에 기여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 靑少年基本法 제3조(정의)제3호 :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서 배움을 살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同法 제11조(청소년활동의 영역구분과 지원체계)제1항제2호 : 주로 생활권이나 자연권에서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과 사회봉사 등 배움을 살천하는 체험활동영역을 단련활동영역으로 한다.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조(수련활동영역)제5호 : 사회봉사·인간관계개발등 협동심증진을 위한 수련활동.
-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2조(청소년정책실)제6항제6호 : 청소년수련과는

22) 중앙일보, 1994.12.20, 8면.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청소년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양성 및 지원.

- 올림픽기장령 제2조(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제1항 : 올림픽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올림픽봉사장 - 올림픽대회 자원봉사요원.
- 장애인올림픽기장령 제2조(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제1항 : 장애자올림픽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장애자올림픽우정장 - 장애자올림픽대회 자원봉사요원.
- 發明振興法시행령 제4조(발명공작실의 운영지원)제2항 : 특허청장은 기업체 또는 연구소의 연구요원, 각급학교 교사 및 학부모등에게 발명공작실 지도교사로 자원봉사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약사법시행규칙 제13조(약학대학생의 조제행위의 범위)제1호 :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조제행위.
- 保護觀察法 제18조(사명)제1항 : 보호위원은 사회봉사정신을 가지고 보호관찰대상자의 교화, 개선과 자립을 도우며,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 同法 제20조(위촉 및 해촉)제1항제2호 : 보호위원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중에서 보호관찰소의 장의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2조(사회복지사의 성실의무)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를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정부표창규정 제6조(공적상) :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 少年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제3항 :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同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제4항 : 제32조제3항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동조제1항제2호의 단기보호관찰의 경우에는 50시간을, 동조제1항제3호의 보호 관찰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현행법령에는 자원봉사활동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은 「대한적십자사법」이 유일하며, 동법에서도 대한적십자사의 사업종류로 예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활동의 내용 및 지원등에 관하여는 대한적십자사의 정관에 맡기고 있다. 그 이외에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과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내지 사회봉사활동을 간접적으로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 또 자원봉사(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올림픽대회와 장애자올림픽대회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기장수여를 행한 적이 있으며,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봉사자를 표창하고 있

다.²³⁾

(3)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바야흐로 사회문제가 날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우리 사회도 그 해결을 위하여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시민사회가 나서서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사회각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나눔과 참여의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자원봉사는 우리사회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건강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건전한 시민윤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²⁴⁾

여기서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①자원봉사활동의 교육·훈련, ②자원봉사활동의 조직화, ③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 및 ④정부의 활성화 노력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자원봉사의 교육·훈련

자원봉사의 활성화는 먼저 국민들로 하여금 다함께 봉사대열에 자발적·조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봉사의 교육·훈련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훈련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 몇몇 사람이나 특수집단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학령전 유아교육부터 시작하여 가정교육, 학교교육 및 직장·사회교육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생교육훈련체계로 정착되어야 한다. 또 자원봉사의 교육·훈련은 인간의 전인적 인격교육을 통한 복지사회의 실현과 공동복지라는 입장에서 교육·훈련의 내용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도 마찬가지로 연구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적십자사, YMCA 등과 같은 전문적인 자원봉사기관에서의 전문적인 자원봉사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자원봉사활동의 조직화

복지사회를 목표로 하는 자원봉사활동도 개인의 산발적인 정신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는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활동이

23) 소년법상 16세 이상 소년의 보호처분의 한 종류로 규정된 「사회봉사명령」이 자원봉사활동에 해당되지 않음을 물론이다.

24)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국정여론, 1994.10. pp.26~37.

필요하게 된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조직화가 필요하다.²⁵⁾

3)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

자원봉사활동이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래 “반대급부(보수·지위·명예와 같은 교환조건)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그 기본적 개념요소로 하고 있다.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어떤 보상을 한다던가 자원봉사자가 이를 바란다는 것은 자원봉사의 본래이념에 반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자신의 생활영위만으로도 바쁜 이기적(self-interest)인 개개인에게 무조건적인 봉사·희생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일정한 영역에서는 공익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볼 때,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자의 최소한의 노력비용을 변제한다는 의미에서의 「사회적 보상」이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보상으로는 자원봉사경력의 점수제도, 경력과 자격인정, 포상, 보험제도의 도입 등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의 본질과 어긋나는 반대급부를 바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²⁶⁾

4) 정부의 활성화노력

자원봉사활동은 궁극적으로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기본적인 복지활동이므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 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은 민주·복지사회의 기반을 다지는 자발적인 활동이므로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자발적·자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지방행정기관이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4)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입법의견

이미 법안으로 제출된 민자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주요 입법의견은 다음과 같다.

25) 범국민적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4년 봄에 대한적십자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 대한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선명회, 한국어린이재단, 한국자원봉사연합회, 청소년연맹, 한국이웃사랑회, 생명문화운동재단, 노인복지시설협의회 등 20여개 단체가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조직하여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단체별 획적 유대 강화, 정보교환, 대국민 출판·홍보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중앙일보, 1994.3.24.

26) 이강현, 앞의 글, 7면.

● 한국시민단체협의회²⁷⁾

- 법제정의 목적 및 기본이념

목적에 “자원봉사활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여 가치의 보존과 창조활동”을, 기본이념에 “시민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을 추가하여야 한다.

- 개념정의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정의에 “계획적·지속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종류에 “전통가치의 보존”, “자조활동(self-help)” 및 “선거관리감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공명선거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할 선거관리(선거부정감시)활동은 포함시켜야 하나, 특정후보의 당선을 지원하는 선거운동은 명백히 배제하여야 한다.

- 조직구성과 운영

민자당안은 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를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직접 관掌하여 감독·통제할 수 있게 되어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정신인 「자율성」이 침해되어 봉사활동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진흥위원회의 역할은 국민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자문기구」이어야 한다. 민주당안에서 기구를 이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자원봉사재단의 역할·구성이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제안의견으로는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봉사단체의 지원, 경력인정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보좌를 받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중앙자원봉사진흥협의회」와, 자원봉사진흥협의회가 정한 기본정책의 범위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중앙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하며, 위원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임명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민간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원봉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져야 한다. 중앙 및 지역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자원봉사단체의 등록을 받고, 자원봉사수요자의 자원봉사요청을 받으며, 자원봉사증서를

27) 양당의 자원봉사지원법안에 대한 의견, 관변단체육성특별법 폐지 및 민간운동관련법안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의견 (1994.11.25)

교부한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구성할 것이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 중앙의 예에 준하여 시·도에도 「지역자원봉사진흥협의회」와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둘다.”

- 자원봉사자활동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정부기구에 귀속시키고, 교육 및 배치, 수급조정을 관주도로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을 법으로 만들지 않아도 이미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단체가 있고 그것 자체가 법에 규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것이므로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자원봉사재단과 같은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성격의 기구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혜택 및 인정에 관한 사항

혜택을 받는 대상을 정부기구에 등록한 회원에 국한 시킬 필요가 없으며, 자원봉사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발생시에는 국가가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자원봉사활동중의 과실에 대하여는 민형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첨가되어야 한다.

- 선거운동자원봉사 포함여부

선거운동자원봉사자는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이므로 자원봉사활동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되므로 자원봉사의 원래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성격이 농후함으로 삭제되어야 한다.

- 기타

민주당안에서 선거관련 자원봉사조직을 따로 만들거나 핵심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선거자원봉사자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선거를 의식한 법제정으로 보인다. 자원봉사활동의 국제교류는 국제화·지방화에 발맞추어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 이강현 (한국자원봉사연합회 운영위원)²⁸⁾

- 정부의 역할

첫째, 정부는 “자원봉사”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이 부족한 예산을 메우는 수단이나 통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둘째, 정부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야 한다. 범인설립요건의 완화, 보조금 지원신청요건의 완화, 교사들의 자유로운 참여보장, 정부기관에의 접근허용, 모금활동의 자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자원봉사육성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나설 미국의 청소년봉사단 내지 은퇴노인봉사단 및 전국자원봉사센터기능을 가지는 재단 등의 창설과 운영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기부금 및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된 실경비의 세금공제혜택, 자원봉사에 관한 각종 행사 및 자원봉사주간의 설정, 자원봉사자에 대한 국가의 표창 및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등을 행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통제와 조정의 대상이 되는 자원봉사관련 조직의 창설을 피해야 한다.

다섯째,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의 목적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이 국민들의 생활 속에 배도록 하여야 한다. 또 “자원봉사자들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자신들의 혁신적인 노력을 사회·문화·경제발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쓰이는 도구로 여기며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자유롭게 모일 권리가 있다”²⁹⁾는 정신을 기본이념으로 하여야 한다.

- 기업의 시민정신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번영이 보다 많은 소비와 여가만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으며, 경제활동 자체도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통되는 중요한 가치들을 누구나 지키고 존중할 때에만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고도의 생산성이 유지된다. 그리하여 기업은 시민정신을 덕목으로 하고, 사원의 충성심과 사기양양, 구체적인 전문기술의 습득,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태도변화, 새로운 시장과의 접촉 등을 통하여 비용절감 및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내 자원봉사서클의 허용 및 장려, 자원배정(자선기금과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경비), 자원봉사휴가제도 및 비영리기관에의 파견, 은퇴예정자 예비교육,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 및 지원, 자원봉사 전담직원의 배치 등의 사항들을 갖추어야 한다.

28) 이강현, 앞의 글, 11~17면 및 중앙일보, 1994. 8. 22, 4면.

29) 제11차 세계자원봉사협회, 세계자원봉사선언문, 1990.

- 언론의 역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언론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언론은 자원봉사센터와 공조 내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언론기관이 자원봉사센터의 일상업무를 행한다던가 특정분야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던가 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시민에게 잘못된 가치를 주입시킬 우려가 있다.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국정모니터 의견³⁰⁾

-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고 일정기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자원봉사자학교를 운영하여,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각종 사회복지단체나 그 밖에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곳에 수료자를 연결해줄 수 있도록 하고, 분야를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전문지식을 교육할 것이 필요하다.
- 잠재적인 봉사요원을 봉사의 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는 자원봉사자와 수혜자를 실질적으로 연결해줄 수 있도록 동사무소나 언론기관에 전담창구를 마련할 것,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가 후원하는 봉사단체를 구성·운영할 것, 사회 각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의 신상메모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것, 자원봉사단체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각 분야의 퇴직자 또는 사회지도층으로 자원봉사기획단을 구성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농어촌의 아연부락 단위나 도시의 동별부녀회를 자원봉사조직으로 활용할 것 등.
-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고교내신에 자원봉사활동을 반영할 것, 헌혈증서와 같은 자원봉사증서를 발부하여 봉사자 자신이나 가족이 자원봉사를 필요로 할 때에 우선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혜택을 줄 것, 기업에서 일정한 봉사횟수와 봉사기간을 채운 봉사자에게는 이를 인사에 반영하게 할 것, 공무원의 채용 또는 인사에 자원봉사경력을 반영할 것 등.
- 막연하게 자원봉사자의 참여만을 기다리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 행정기관에 자원봉사자와 수혜자를 실질적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전담창구를 마련할 것, 일선 동사무소에 자원봉사홍보책자를 비치하고 일반국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 등.

30)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앞의 글, .26~37면을 요약.

III. 외국의 법제와 관련제도의 내용

영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일찌기 사회개량주의자들에 의하여 빈곤자·부랑자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선사업·구빈활동등이 활발하게 행해졌다.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국가는 이들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법제도화하였다.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된 이후에도 자선봉사 전통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들 사이에 계속되어 활발한 자원봉사가 행해지고 있었다. 이들 국가에서도 70년대 들어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나라는 역시 자원봉사가 가장 활성화된 미국이다.

1. 미국

일반적으로 미국은 연방법률을 통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각종 지원 및 사회적 보상체계를 규정하고 또 정부가 주관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들을 실시함으로써,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법제도가 가장 방대하게 구비되어 있는 나라로 일컬어지고 있다.³¹⁾ 그러나 이와 같은 입법 이전에도 1960년대 케네디대통령 시절에 연방정부차원의 자원봉사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당시 그는 뉴프런티어정책의 일환으로 평화봉사단(Peace Corps)을 조직하여 제3세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케 하였다. 케네디대통령 이후 존슨대통령은 미국내 빈곤퇴치를 위하여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정책을 실시하고, 동 정책의 일환으로 평화봉사단의 국내판인 「미국조국자원봉사자」(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 : VISTA) 및 「온퇴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 : RSVP)등의 전국빈곤퇴치자원봉사프로그램(National Volunteer Antipoverty Programs)을 설치하였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와 같은 정부지원은 1969년 공화당의 낙수니 집권하면서 보다 강화되고 정비되었다. 낙수니는 1969년 4월 백악관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대규모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국차원의 민간조직의 설립필요성을 파악하여 이듬해인 1970년 2월에 전국자원봉사활동센터(National Center for Voluntary Action; NCVA)³²⁾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31) 중앙일보, 1994. 7. 26, 18면.

32) 이 민간기구는 그 후 1979년 다른 민간조직을 흡수하여 전국·지역사회자원봉사센터(National and Community Volunteer Center)로 발전하고 다시 두세 차례에 걸쳐 타조직을 흡수·통합하다가 1991년 마침내 현

닉슨행정부는 이같은 민간활동에 대한 지원 외에, 1971년 그 동안 3개부처로 나뉘어 운영되던 연방프로그램 7개를 하나의 독립기구인 ACTION Agency(廳)이 관장토록 하였다. 또 ACTION청의 창설과 더불어 자원봉사활동을 법적으로 더욱 보장하기 위하여 1973년에 마침내 「국내자원봉사활동법」(Domestic Volunteer Services Act)³³⁾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에서 ACTION청 및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을 합법화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제도적인 육성을 꾀하였다. 무려 6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동법은 당시 연방정부에 별도의 자원봉사진흥기구로서 Action청³⁴⁾을 설치하고 동기구의 자금지원을 받는 공私の 기관들에 대하여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위한 여러가지 규정들을 강제하였다.

1981년 레이건행정부는 대통령직속으로 민간활동지원단을 구성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육성책을 꾀하였으며, 계속된 부시행정부에서도 복지, 교육, 환경 및 공공안전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지역사회 봉사법」(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³⁵⁾을 제정하였으며, 이어 클린턴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전국지역사회봉사신탁법」(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Trust Act)을 제정하여³⁶⁾, 위 양법을 개정하고 기존의 ACTION청을 「국가·지역사회 봉사공단」(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³⁷⁾에 흡수시켰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 미국의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입법은 「국내자원봉사

재의 Points of Light Foundation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Points of Light Foundation"에 관하여는 42 U.S.C.A. §§12661 ~ 12664 참조.

33) Pub.L. 93-113, Oct.1.1973 (42 U.S.C.A. §§4951 et seq.). 동법은 1975년(Pub.L. 94-130), 1976년(Pub.L. 94-293), 1978년(Pub.L. 95-478), 1979년(Pub.L. 96-143), 1980년(Pub.L. 96-187, 465, 470,533), 1981년(Pub.L. 97-35), 1982년(Pub.L. 97-214), 1984년(Pub.L. 98-288), 1986년(Pub.L. 99-551), 1989년(Pub.L. 101-204) 등 거의 매년 개정되어 오다가, 현재는 1993년의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Trust Act(Pub.L. 103-82, Sept.21,1993)에 의한 개정법으로 되어 있다.(U.S. Code Congress and Administrative News, Nov. 1993, No.9 참조)

34) ACTION청은 연방, 주 및 지방 단위로 자원봉사활동의 중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으로 설치되는데, 동 기관은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들 사이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조정을 촉진하고 당해 기관과 단체들 사이에 기술적 지원의 정보를 교환한다. 廳長(Director)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었다.(1973년 법 제5041조 참조)

35) Pub.L. 101-610, Nov. 16, 1990 (42 U.S.C.A. §§12501 et seq.). 동법도 1991년(Pub.L. 102-10)과 1992년(Pub.L.102-384)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Trust Act(Pub.L. 103-82, Sept.21,1993)에 의한 개정법으로 되어 있다.(U.S. Code Congress and Administrative News, Nov. 1993, No.9 참조)

36) Pub.L. 103-82, Sept. 21, 1993. (U.S. Code Congress and Administrative News, Nov. 1993, No.9 참조)

37) 동 공단에는 학교·지역단위학습프로그램에서 봉사하고 있거나 참가자로 되어 있는 16세 이상 25세 미만의 개인을 포함하여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15인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는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경험이 있는 자, 학식이 뛰어난 자, 인간·교육·환경·공공안전 등의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가로서 인종·민족·연령·성별 및 장애적 성성이 다양하게 분포되고 특정 정당출신이 50%가 넘지 않도록 임명되어야 한다. 교육부·보건부·노동부·내무부·농림부·주택도시개발부·국방부·법무부 장관, 평화봉사단장, 환경보호청장 및 공단의 사무총장은 의결권없는 직무상 당연직 이사가 된다. 이 사장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각 이사의 임기는 5년이다.

법³⁸⁾과 「국가·지역사회봉사법」³⁹⁾으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주로 미국 내의 빈곤 및 빈곤관련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규정하고, 후자는 주로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교육·환경·공공안전 등의 수요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을 규정하고 있다.

(1) 국내자원봉사법(domestic volunteer Services Act)의 주요내용

1993년도에 개정된 현행 「국내자원봉사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법목적

동법은 “오랜 미국역사 속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과 노인들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전통을 촉진하는 것을 의회의 정책으로 한다. 연방자원봉사청인 ACTION의 목적은 빈곤자, 사회적·경제적 약자 및 노인들을 도우려는 활동에 대하여 국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육성·확대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ACTION은 동법에서 위임된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하고,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조정하고, 모든 미국인들의 에너지, 혁신정신,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한다”고 입법정책을 선언하고 있다.⁴⁰⁾ 이러한 입법목적아래에서 동법은 빈곤자 등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연방자원봉사기구인 ACTION청의 창설과 각종 프로그램의 관리·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프로그램의 종류와 개요

미국법에서의 특색은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주체·방법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법에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혜택과 각종 요건·기준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빈곤자와 빈곤관련문제를 봉사활동의 대상으로 하는 「전국빈곤퇴치자원봉사프로그램」(National Volunteer Antipoverty Programs)과 은퇴자 및 노인들이 주체가 되는 「전국노인자원봉사단」(National Senior Volunteer Corps)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빈곤퇴치프로그램에는 미국조국자원봉사자(VISTA), VISTA를 위한 대학봉사프로그램(UYV) 및 특별자원봉사프로그램을 두고, 전국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에는 은퇴노인자원봉사프로그

38) 42 U.S.C.A. Chapter 66-Domestic Volunteer Services, §§4950~5084.

39) 42 U.S.C.A. Chapter 129-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12501~12681.

40) 42 U.S.C.A. §4950.

램(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 육아노인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 Program), 노인동무프로그램(Senior Companions Program) 등을 두고 있다.

먼저, VISTA프로그램은 미국내에서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 및 은퇴미국인들의 빈곤과 빈곤관련문제를 퇴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다.⁴¹⁾ 동 프로그램은 국가·지역사회 봉사공단의 VISTA담당 이사에 의하여 운영되는데, 당해 이사는 자원봉사프로그램에 봉사할 사람들을 모집·선발·교육훈련을 실시하고⁴²⁾, 공공 또는 비영리단체로부터 자원봉사자의 신청을 받아 적정한 계획 및 프로그램에서 봉사활동할 선발된 자원봉사자를 할당한다. VISTA활동의 내용은 ①보건·교육·복지 및 관련 수요를 충족시키는 활동, ②정신적·육체적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치료 및 사회적 복귀, ③부랑자, 무직자, 기아자 및 저소득 청년들의 문제에 대한 활동, ④알콜·약물남용금지자에 관련된 특별수요 및 교육 등에 대한 활동, ⑤만성적·치명적 질병과 부랑자의 건강치료를 포함하는 중요한 건강치료문제에 대한 활동 및 ⑥전국의 문맹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보충하고 확대하는 활동 등이다.⁴³⁾ 이사는 자원봉사자의 지방적·전국적 배치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모집·배치절차를 수립하고,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책임지는 자원봉사자배치소를 ACTION청 전국본부에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전일제 봉사(full-time service)를 할 수 있어야 하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봉사기간동안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 자원봉사자는 등록시에 미국 헌법을 전복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고 미국헌법을 전복하는 조직체의 구성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⁴⁴⁾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교육훈련 및 배정된 기간에 월 95달러 이하(1994회계연도)의 봉급(stipend)을 지급받으며, 월 95달러 이상의 생활·교통·휴가수당 및 의식주·보건·봉사교육수당 등의 보조수당을 지급받는다. 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돌보아야 할 아동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 직접 보호하거나 아동보호수당을 지급한다.⁴⁵⁾ 특히 VISTA에는 가능한 한 자원봉사에 의하여 봉사받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당해 프로그램을 계획·개발·확충하는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사는 이들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규칙과 상설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⁴⁶⁾

다음, VISTA의 일환으로, 동법은 봉사경험의 교육적 가치를 고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봉사학습·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빈곤퇴치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하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된 학생들에 의한 전일제 자원봉사인 「VISTA를 위한 대학봉사(University Year for VISTA(UYV))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동

41) 42 U.S.C.A. §4951.

42) 42 U.S.C.A. §4952.

43) 42 U.S.C.A. §4953 (a).

44) 42 U.S.C.A. §4954.

45) 42 U.S.C.A. §4955.

46) 42 U.S.C.A. §4956.

프로그램의 목적은 소속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의 이수와 관련하여 협력기관에서 의미있고 건설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빈곤관련 인간적·사회적·환경적 문제들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확충하는데에 있다.⁴⁷⁾ 이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도 VISTA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동안 등록하여야 하고, 고등교육기관의 규칙에 따라 당해 봉사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고, 또 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수당 및 기타 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⁴⁸⁾

「전국노인자원봉사단」(NSVC)은 아래의 3종류로 구성되는데, 노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공헌할 수 있게 하고,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를 받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에 가치있는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은퇴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RSVP)」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데에 자신들의 경험·활동·기술 등을 제공하려고 하는 노인들의 광범한 능력을 이용하려는 것이다.⁴⁹⁾ 지역사회에서 은퇴자 및 노인들이 자원봉사의 기회를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는 자원봉사계획의 개발·운영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출할 것을 주 당국에 인가하거나 기타 공공·비영리 기관에 인가·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이사가 정하는 인가조건은, ①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에 부수적인 교통비, 급식비 및 기타 현금지출을 제외하고는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55세 이상의 노인만이 이 프로그램에 의한 자원봉사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60세 이상의 노인은 우선적으로 등록된다. ③계획에는 참가하려는 자원봉사자의 재능과 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에 필요한 단기간 훈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당해 훈련기간 동안 당해 자원봉사자에게 지출할 합리적인 비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⁵⁰⁾ 한편 「육아노인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예외적·특별한 수요에 맞추어 아동에게 지원적이고 개별화된 자원봉사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며, 「노인동무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자원봉사를 통하여 다른 노인들에게 개인적 원조 및 말동무를 제공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⁵¹⁾

3) 관리와 조정

국내자원봉사법에 규정된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정신(volunteerism)의 핵심을 연방, 주 및 지방 단위에 제공하기 위하여 연방행정기구로서 설립된 ACTION Agency(청)에 의하여 관리된다.⁵²⁾ 이 외에 동법은 다음과 같은 각종 프로그램과 기금에 대한 관리·조정에 관한

47) 42 U.S.C.A. §4971.

48) 42 U.S.C.A. §4973.

49) 42 U.S.C.A. §5000 (2).

50) 42 U.S.C.A. §5001.

51) 42 U.S.C.A. §5000 (2),(3).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① 정치활동의 금지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배정된 기금 및 ACTION청에 의하여 관리되는 프로그램은 연방공무원, 주공무원 기타 지방공직자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활동 및 투표자등록활동에 직접·간접으로 재정지출될 수 없다. 동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은 공직 또는 정당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상대방과 관련된 당원·비당원의 정치활동,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에 대한 교통비 기타 유사한 원조를 투표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및 기타 투표자 등록활동 등과 당해 프로그램을 동일시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기금의 사용, 봉사의 제공 또는 직원의 고용·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프로그램의 주소지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투표자등록신청 및 비당원투표자등록정보제공은 예외로 한다. 위에서 허용된 투표자등록활동을 행하는 경우에도, 동법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거나 고용되어 있는 자는 후보자, 정당 또는 선거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당가입 또는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입법의 통과·저지 또는 입법청원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은 동법에 의하여 배정된 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⁵³⁾

② 연방프로그램의 근로기준

동법에 의한 연방의 지원을 받는 근로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이 지방단위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적인 건설업 이상의 임금수준을 지급받는다. 그 구체적인 근로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⁵⁴⁾

③ 교육기관 및 학교제도에 관한 연방통제의 금지

동법의 규정을 근거로 연방의 정부부처, 공무원 및 피용자는 교육기관 및 학교제도의 교과과정, 교육계획, 관리 또는 직원에 대하여 지시·감독·통제를 행사할 수 없다.⁵⁵⁾

④ 다른 프로그램과의 조정

이사는 동법에 의한 자원봉사프로그램과 지역사회활동프로그램 및 기타 관련 연방·주·지방 프로그램을 조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⁵⁶⁾

52) 42 U.S.C.A. §5041.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1993년법에 의하여 ACTION의 기능은 전국·지역사회봉사재단의 국내자원봉사프로그램 각 담당 지원이사(4인)에게 이관되었다. (42 U.S.C.A. §12651e)

53) 42 U.S.C.A. §5043.

54) 42 U.S.C.A. §5046.

55) 42 U.S.C.A. §5049.

⑤연방법의 적용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에 의한 자원봉사자는 연방피용자로 볼 수 없으며, 연방공무원 및 연방고용관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 예외는 다음과 같다.

전일제 자원봉사의 기간 또는 계속된 26주 이상의 기간동안 주당 20시간 이상의 시간제 자원봉사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는 당해 자원봉사 또는 교육훈련에 관하여 ⑦ 연방정부의 행정관청에 고용된 자로 간주되고, ⑧내국세법 및 사회보장법상 연방의 피용자로 간주되며, 자원봉사로 수행된 봉사는 연방근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고, ⑨연방불법행위법상 연방의 피용자로 간주되고, ⑩연방피용자의 노동재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연방의 민간피용자로 간주되고, 동법에 의하여 지급된 봉급·수당과 관련 하여서도 연방의 피용자로 간주된다.⁵⁷⁾ 적어도 1년 이상 빈곤퇴치자원봉사프로그램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봉사기간은 연방정부에 의한 민간고용기간의 유사경력의 방식으로 계속적 고용으로 평가된다.⁵⁸⁾

(2) 국가·지역사회 봉사법(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의 주요내용

1993년에 개정된 현행 「국가·지역사회 봉사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법목적

동법은 “기존의 노동력을 대체하지 않고서 연방의 불만족한 인간적·교육적·환경적 및 공공안정의 수요를 충족하고, 연방차원에서 시민적 책임 및 공동체 정신을 새롭게 하고, 고등교육 또는 직업훈련의 전문능력으로 국가적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교육적 기회를 확대하고, 전일제·시간제 국가적 봉사에 종사하는 연방의 시민을 장려하고, 참가자와 지역사회에 가시적인 혜택이 되는 조직화된 봉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봉사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강화하고, 모든 시민을 위한 전일제·시간제 봉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직화된 봉사에 대한 연방, 주 및 지방프로그램의 봉사지원시설을 구축하고, 국가적 봉사가 수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에 현실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⁵⁹⁾

56) 42 U.S.C.A. §5050.

57) 42 U.S.C.A. §5055 (b).

58) 42 U.S.C.A. §5055 (c).

59) 42 U.S.C.A. §12501.

이러한 목적하에 동법은 「국가·지역사회봉사주승인프로그램」(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State Grant Program) 아래에 다양한 세부프로그램을 규정하고, 동법에 의한 프로그램들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지역사회봉사공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동법에 의한 봉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적·비영리 단체로서 Points of Light Foundation의 승인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프로그램

동법은 국가·지역사회봉사주승인프로그램의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 ①학교단위 및 지역사회단위의 봉사학습프로그램, ②국가봉사신탁프로그램, ③시민지역사회봉사단, ④미국청년봉사단 및 ⑤도시청년봉사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국가·지역사회봉사공단

위 공단은 국가·지역사회 봉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상의 정부법인으로 설립되었다.⁶⁰⁾ 동 공단은 국가·지역사회봉사위원회 및 ACTION 청의 기능을 이관받았다.⁶¹⁾ 공단은 이사회, 사무총장, 임원, 직원 및 고문으로 구성된다.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학교단위·지역단위 학습프로그램에서 봉사하고 있거나 참가자로 되어 있는 16세 이상 25세 미만의 개인을 포함하여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15인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는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경험이 있는 자, 학식이 뛰어난 자, 인간·교육·환경·공공안전 등의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가로서 인종·민족·연령·성별 및 장애적 성성이 다양하게 분포되고 특정 정당출신이 50%가 넘지 않도록 임명되어야 한다. 교육부·보건부·노동부·내무부·농림부·주택도시개발부·국방부·법무부 장관, 평화봉사단장, 환경보호청장 및 공단의 사무총장은 의결권없는 직무상 당연직 이사가 된다. 대통령은 이사중 1인을 최초의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그 이후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각 이사의 임기는 5년이다.⁶²⁾

사무총장(Chief Executive Officer)은 공단의 대표자이며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동법을 시행하기에 필요하고 적정한 규칙·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⁶³⁾

임원(Officers)중에서 관리이사(2인)는 프로그램의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한 부를 대표하

60) 42 U.S.C.A. §12651, 5 U.S.C.A. §103.

61) Pub.L. 103-82, §202(c) 및 §203(c) 참조.

62) 42 U.S.C.A. §12651a.

63) 42 U.S.C.A. §12651c.

며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받아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고, 1인의 감사를 두며, 재무총장은 재정을 관리하며 역시 상원의 동의와 권고를 얻어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고, VISTA와 전국노인자원봉사단 지원이사가 4인 있다.⁶⁴⁾ 한편 공단은 각 주에 공단대표자 1인을 둔다.⁶⁵⁾

이와 같이 미국의 자원봉사육성노력은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제도화되어 왔다. 그 제도에 민간단체·학교·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들 연방법 이외에도 미국에서는 주정부법으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규정들이 많다고 한다. 뉴욕, 워싱턴, 오리건, 조지아주 등의 주법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시간을 유급 활동시간과 똑같이 인정해 가산점(credit)을 주도록 하고 있는 것, 76년 하와이주법령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고보험·자동차보험을 가입해주고 봉사경력을 개인적 직업경력으로 인정해 주도록 규정한 것, 대학의 입학사정때 지원생들의 사회봉사여부를 알아보고 기업들 역시 자원봉사경력을 입사시험에 가산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⁶⁶⁾

2. 일 본

일본에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은 없으나, 패전후에 제정된 「民生委員法」(1948. 7.29, 法律第198號)에 의하여 정부가 위촉하는 일종의 관립자원봉사자인 민생위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에서는 1992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제정된 「국민의 사회복지활동에의 참가를 촉진하는 조치에 관한 기본지침」에 의한 자원봉사활성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1) 민생위원회

민생위원은 사회봉사정신을 가지고 보호지도업무에 있어서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로서 市町村구역에 둔다. 민생위원은, 먼저 市町村의 민생위원회추천위원회가 都道府縣지사에게 추천한 자를, 다시 都道府縣지사가 都道府縣의 지방사회복지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후생장관에게 추천하고, 이 자를 후생장관이 위촉한다. 민생위원회는 당해 市町村의 의회의원의 선거권자중에서 인격과 신경이 높고 널리 사회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로서 아동복지법의 아동위원으로 적당한 자를 민생위원으로 추천한다.(제6조) 민생위원은 명예직으로서 그 임기는 3년이다.(제10조)

64) 42 U.S.C.A. § 12651e.

65) 42 U.S.C.A. §12651f.

66) 중앙일보, 1994. 7. 26, 21면.

민생위원은 市町村의 구역내에서 당해 구역 또는 사항을 정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데, 그 직무로는 ①평상시 생활상태의 조사·심사, ②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지도, ③사회복지사업시설과 밀접하게 연락하여 그 기능을 보조, ④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복지사무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업무에 협력 및 ⑤필요에 따라 생활지도 등을 행한다.(제13조, 제14조)

민생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都道府縣지사의 지휘감독 및 지도훈련을 받으며, 市町村장은 민생위원에 대하여 보호를 요하는 자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작성할 것을 명하고 민생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행할 수 있다.(제17조, 제18조) 민생위원, 민생위원추천위원 및 민생위원의 지도훈련에 관한 비용은 都道府縣지사가 부담하는데, 국고는 都道府縣이 부담한 비용중 후생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26조, 제28조)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

사회복지분야에서는 1975년부터 전국 3,400개 지방사회복지협의회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자원봉사·교육·안내 등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또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후생장관은 국민의 사회복지활동에의 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기본적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동법 제70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제4호) 국민의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두었다. 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사회복지에 관한 활동에의 참가촉진을 도모하는 조치에 관한 기본지침」⁶⁷⁾이 고시되었다.

동 지침은 다음과 같은 현실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근래 고령화의 촉진, 가족형태·부양의식의 변화, 자유시간의 증대, 생활의 질 내지 마음의 풍요의 증시 등을 배경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원봉사활동 등록자수의 증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의한 자발적인 복지활동이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기업 및 노동조합에 의하여 복지와 관련된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들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으며, 국민의 참가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원봉사활동자에게는 자기실현의 욕구 및 지역사회에의 참가욕구가 충족된다. 또 자원봉사활동의 수혜자에게는 사회참가가 촉진됨과 동시에 공적서비스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다양한 복지수요가 충족된다.

둘째, 사회로서는 사회연대 내지 상호부조의 의식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67) 1993.4.14, 厚生省 告示 第17號.

이 서로 의지하고 교류하는 살기좋은 복지사회만들기가 진전됨과 동시에 공적서비스와 더불어 두터운 복지서비스의 제공체계가 형성된다.

셋째, 복지담당자의 양성확보의 관점에서는 종합적·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복지전문가에서 일반자원봉사자까지 다양하고 중층적인 구성을 필요로 하며, 또 자원봉사자의 활동경험은 사회복지사업종사자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장래 복지직장에 참여할 기회도 될 수 있다. 나아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개호·육아의 기술 등이 지역사회에 전달되어 주민의 개호력 등이 향상될 기회로 작용한다.

앞으로 활력있는 장수사회를 만들고, 장애자의 자립을 촉진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양육되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이들 국민의 사회복지활동이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들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활동을 촉진하는 네트워크체제등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의욕에 부합한 기반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 기본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참가촉진의 기본입장

① 자주성의 존중 : 자원봉사활동 내지 주민참가형 복지활동 등과 같은 국민의 복지활동에 대한 참가를 촉진함에 있어서는 활동의 자주성, 자발성 및 창조성이 최대한 존중되고, 그 지원책이 국민의 자기실현 내지 사회참가에 대한 의욕에 맞추고 이에 기여하도록 행해져야 한다.

② 공적서비스와의 역할분담과 제휴 : 고령화 내지 핵가족화의 과정에서 필요로 되는 사회복지의 기초적 수요는 행정이 제1차적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자원봉사활동등의 복지활동은 이들 공적서비스로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복지수요에 대하여 유연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기대된다.

③ 지역복지의 종합적 추진 : 주민생활에 밀착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자주적인 복지활동을 자유롭고 계속적·안정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동시에 市町村·사회복지협의회등 각 관계분야와 제휴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창의적으로 모색함으로써 公私의 복지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한다.

④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사회만들기 : 종래 자원봉사활동은 일부의 헌신적인 사람들이 소수의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행하는 일방적인 봉사활동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고령화의 진행,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의 침투, 주민참가형 상호자원봉사 활동의 확대 등에 수반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상호협조하고 교류한다는 넓은

의미에서의 복지마인드에 기초한 공동체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2) 자원봉사활동에의 참가촉진을 위한 조치의 내용

① 복지활동에 대한 이해의 증진

- 복지교육·학습 : 복지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유아기부터 복지활동의 체험을 통하여 복지마인드 내지 사회연대의식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이와 같은 체험은 아동의 건전육성에 매우 유효하다. 이를 위하여 아동·학생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계발·보급, 사회복지시설의 방문, 체험숙박활동 등을 더욱 추진한다. 앞으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유아기부터 고령기까지의 평생동안 복지교육·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복지교육·학습을 추진할 때에 사회복지사업경영자등은 먼저 학교, 교육위원회 등 교육기관관계자의 이해와 협조를 얻을 필요가 있다. 또 직장연수 가운데 가정이나 지역의 문제, 노후준비 등 복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계발·보급 : 자원봉사활동에 국민의 이해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는 전국대회를 추진하는 등 전국적 규모의 계발·보급에 노력한다. 또 선구적·모델적 활동에 대한 홍보, 개발, 정보제공 및 조사연구를 추진한다. 市町村 등에서는 각종 모델사업등을 활용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홍보·개발한다. 기타 자원봉사활동기간의 설정등 창의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 사회적 평가 : 복지활동에의 참가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복지활동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평가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 都道府縣 및 市町村 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단체, 기업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전체적인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후생장관의 표창 이외에 적극적인 평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채용등에서 자원봉사활동실적을 고려하고, 입학선발등 학교 교육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등의 동향을 근거로 하면서, 사회복지관계단체등의 이해와 협력을 얻으면서 자원봉사활동의 실적에 관한 정보제공등의 방책에 대하여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② 복지활동의 조건정비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기 쉽도록 기반정비를 행하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가장 중요하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초하여 복지활동에 주민참가를 위한 원조를 행하고, 각종 사회복지시설·민간자원봉사단체 등과 제휴하여 누구나 어디에서 쉽게 활동할 수 있고 지원을 받는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시책을 추진한다.

- 양성연수 및 자원봉사보험의 보급 :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기술의 습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都道府縣에서 자원봉사지도자의 양성연수를 추진한다. 이

때 고령자·장애인·아동 등의 특성에 따라 연수내용을 충실히 하고 동시에 고령자등이 가지는 지식이나 경험을 적극적으로 살리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 개호설습보급센터·노인복지인재센터의 정비, 아동관 등의 적극적 활용에 노력한다. 자원봉사활동에 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등의 보급확대에 노력한다.

- 자원봉사센터의 정비충실 : 자원봉사활동의 거점이 되고, 홍보·계발, 자원봉사자의 등록 및 알선, 단체의 조직화,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제공을 행하는 자원봉사센터를 국가·都道府縣 및 市町村의 각 사회복지협의회등에 정비함과 동시에 다각적인 복지활동의 네트워크체계화를 추진한다. 네트워크의 핵심이 되고 연락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자(Coordinator)의 배치등 기능의 충실에 노력한다. 자원봉사센터는 차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사회복지시설, 학교, 비영리민간단체, 기업, 노동조합 등과 제휴의 강화에 노력한다.
- 지역에서 복지활동추진체제의 정비와 모델사업의 추진 : 市町村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모델사업을 추진한다. 복지관계자는 우선 학교, 기업, 자치회 등 지역관계단체의 참가와 협의의장을 개설하고, 지역단위로 자원봉사활동의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활동의 조직화등의 기반조성을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주민·민생위원·아동위원, 사회복지시설, 각종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복지활동네트워크를 만들고 지역복지를 위한 체제정비를 추진한다.
- 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원체제의 정비 : 사회복지시설이 가지는 기능·전문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역에 개방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이 복지활동에 원활하게 참가하도록, 시설내의 지역교류공간의 확보 및 모델사업의 활용등에 의한 시설에의 지역복지조정자를 배치함으로서 시설내활동의 지원체제정비에 노력한다. 또 아동·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이나 기업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 이외에,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시설에의 방문 및 입소자와의 교류가 일상적으로 행해지도록 노력한다.

③ 주민참가형 복지서비스공급조직의 활용

자원봉사활동의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모습으로 복지공사, 소비생활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및 주민참가의 자주적 복지조직에 의한 복지활동이 활발해지고, 또 市町村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주민참가형의 자주적인 복지활동이 급속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이들은 회원제·상호부조성·유상성에 그 특색이 있다. 모두 국민의 복지활동참가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며 「모두 참가하는 복지사회만들기」에 빠질 수 없는 것들로서 이들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 활동이 원활하고 계속적으로 행해지도록 주민참가형단체의 조직화, 市町村 및 사회복지협의회의 협력에 의한 각 단체와의 제휴, 담당자의 확보, 활동수칙·교범 등의 개발 및 보급, 교육연수 등의 지원에 노력한다.

④ 기업 및 노동조합의 사회적 공헌활동

지역사회에 목표를 두고 사회공헌활동에 참가하는 기업 및 노동조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분위기를 더욱 고양하고 조건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과 민간이 공동으로 각종의 조사연구를 추진한다. 활동교법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자원봉사센터 등에 각 기업 등의 요구에 합치한 조정, 사회참가형에 관한 교육연수 및 각종 정보제공을 행하는 체제정비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종업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기업이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휴가제도의 계발, 활동평가수법의 개발보급 등의 조건정비도 필요하다. 기업 등의 사회적 공헌활동으로서 행해지는 기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공제 등의 세제상의 조치에 추가하여 기업에 대한 기부처의 소개·알선 등을 행하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표창 등 사회적 평가의 충실에 대하여 각 방면의 이해증진에 노력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활동에의 참가촉진을 위한 지원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市町村의 대응이 특히 중요하며, 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활동전문요원의 설치, 자원봉사센터의 정보집중·제공기능의 강화, 지역복지센터 등의 활동거점의 정비 등에 대하여 지원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사업을 추진하는 이외에 都道府縣 및 市町村에 의하여 조성된 지역사회복지기금의 적극적 활용 및 세제상 우대조치가 강구되고 있는 자원봉사기금의 조성에 더욱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주민의 창의성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자원봉사활동단체나 주민참가형 복지활동을 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상의 조치 기타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또 복지활동에의 참가촉진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都道府縣은 市町村과 제휴를 강화하고 동시에 보건의료는 물론 교육, 상공, 노동 등의 관련정책과의 제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영 국⁶⁸⁾

영국에서는 19세기 후반에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체계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주장이 생기게 되었고 아울러 사회개량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사상의 실천의 하나가 인보운동(Settlement Movement)이었다. 19세기 후반의 영국의 사회복지는 일반시민의 참여를 불러일으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선활동이 행해졌는데, 자선에 의한 자발적인 활동은 그 노력에 비하여 큰 효과는 없었으며 부작용도 많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자선활동의 조직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

68) 김영호, 앞의 책, 19~21면 참조.

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의 조직적인 자원복지활동의 대표적인 것은 자선단체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와 인보운동(Social Settlement Movement)이다.⁶⁹⁾ 자선단체협회는 교회의 자선활동과 민간사회복지활동을 효과적·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으로 런던시를 몇개의 지구로 나누어 각 지구에 구빈위원회를 두고 우애방문을 통하여 빈곤자를 지도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구빈사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였다. 인보운동은 빈곤지구에 정주하면서 지구주민을 교화하며 분리되고 있는 사회계급간의 거리감을 좁하기 위하여 지역의 제문제를 서로 같이 생각하며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의 특색은 다수의 일반시민이 隣保館(Settlement House)에 살면서 지역주민과 우애관계를 갖고 원조를 행하는 것이었다. 즉, 사회문제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빈민지역에 정주하면서 사회악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하고자 하는 노력의 최전선의 거점이 『세틀먼트』인 것이다. 이 사회악과의 싸움을 위해 지원하는 지원병이 Volunteer인데 여기에서 자원봉사자(volunteer)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의 노력이 기초가 되어 영국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와 지원내용이 규정되었다.

자원봉사활동은 1960년에 제정된 「慈善法」(Charity Act)에 의하여 지원되는데, 동법은 민간사회사업기관·단체를 보호·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에 등록된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감독과 모금허가 및 조세감면등의 특혜를 주고 있다.⁷⁰⁾

또 「지방당국사회복지서비스법」(The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 : LASSA)이 있는데, 동법은 1968년의 Seeböhm Committee가 마련한 시봄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1970년에 제정된 것으로, 지방단위에 '통합사회복지서비스국'을 설치하고 예방을 포함하는 모든 분야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이곳을 중심으로 행하여지도록 하였다. 통합사회복지서비스국은 동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내의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지원과 조정을 한다. 그리고 동법을 근거로 하여 자원복지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을 위탁하게 되었고, 정부주도보다는 민간주도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아울러 민간기관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1970년에 시봄보고서의 영향을 받아 「만성병환자와 장애자법」(The Chronic, Sick and Disabled Persons Act : CSDPA)이 제정되었다.

한편 1972년에 중앙정부의 보건사회보장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 DHSS) 안에 자원봉사국(Voluntary Service Unit)을 두어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게 하였다. 즉, ①각종의 민간분야의 관심을 조정하고, ②민간기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69) 柴田善守, 國際的にみたボランティア活動の方向, 公衆衛生 제42권 제6호, 의학서원, 1978, 364頁.

70) Hugh W. Mellor, The Role of Voluntary Organizations in Social Welfare, Croom Helm Ltd., 1985, p.17.

다른 기구와의 관계형성을 돋고, ③각종의 자원봉사활동의 육성기관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키며, ④정부내에서 최종적인 재정지원을 한다.

정부는 자원봉사단체의 요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한다. 대부분 규모가 큰 단체에 대하여는 평균 전체예산의 60% 이상을 재정지원하고 있다. 자원봉사단체들은 대부분 전국자원봉사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에 가입하고 있으며, 400개 이상의 자원봉사단체가 그 회원이 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대부분 자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IV. 여야당 법안의 주요내용과 분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하여 제도적 지원을 시도한 입법은 1987년 보건사회부에 의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란 이름으로 처음 입안되었었다. 그 이후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1994.7.25)의 국회제출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자원봉사지원법의 필요성과 그 대상·범위 및 사회적 보상 등에 관한 논의가 정부부처·여야당·민간단체 등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며, 급기야 민자당과 민주당이 사회복지분야 및 공익분야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법적 근거로서 「公益自願奉仕振興法案」(1994. 11. 21)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1994. 12. 1)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였다. 보건사회부의 「社會福祉事業法改正案」은 여당인 민자당안에 포함되어 국회제출이 포기되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여야당의 법안을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지원입법의 필요성

(1) 법안의 제안이유

민자당의 「公益自願奉仕振興法案」⁷¹⁾과 민주당안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⁷²⁾의 제안이유에 나타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지원입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민자당안은 “최근 사회전반의 개방화·민주화·지방화 물결은 각 분야에 걸쳐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있고, 그 동안 급속한 산업화 과정 속에서 가치규범의 상실, 사회공동체해체의 위기에 직면하여, 국민 각자가 범죄예방·청소년선도·재난관리·사회복지·환경 등 다양한 부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과제들을 해결하고 공동체의식을 고양함으로써 통일·복지사회로 가기 위하여” 주민들이 사회개혁의

71) 「公益自願奉仕振興法」이라는 민자당의 법안의 명칭은 「사회복지분야」를 제외한 「공익분야」만의 자원봉사진흥법이라는 오해를 낳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단순히 「자원봉사(활동)진흥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72)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라는 민주당의 법안의 명칭도 마찬가지로 「기본법」의 개념·성격·유용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 그리고 동법안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활성화를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주체로 나서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 이러한 자원봉사의 이념적 틀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익자원봉사 진흥법」을 제정한다고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다.⁷³⁾

이에 대하여 민주당안은 “자원봉사활동은 이웃과 공동체의 어려운 일에 대하여 공동체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대가없이 봉사한다는 점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요소이며, 공동체의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인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구현하는 정신적 요소가 된다. 또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구체적 현실문제 및 날로 중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예산증액과 공무원의 중원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적 연대감, 봉사정신 및 참여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이 체득되고 확산되어야 한다”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그 동안 방치되어온 각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법적·제도적 혜택을 부여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민간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지원조직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⁷⁴⁾

이와 같이 복지수요를 비롯한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연대감형성 및 주민 참여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고 민주·복지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여야당은 그 표현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생각컨대,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복지의 개념이 국가가 앞장서는 「복지국가」에서 주민들이 이웃을 생각하고 지역사회공동체를 돌보는 「복지사회」로 바뀌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⁷⁵⁾ 각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이 궁극적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형성의 초석이 되고, 복지국가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나아가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실천적 운동이라고 할 때에,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일정한 지원 및 보상체계를 법 제도화함으로써 그 활동이 더욱 촉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3) 남평우 의원외, 公益自願奉仕振興法案(의안번호 932), 1992.11.21의 제안이유.

74) 박상천 의원외,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의안번호 964), 1994.12.1의 제안이유.

75) 張明根, 앞의 글, 267면.

그러나 이와 같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법의 제정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1) 자원봉사활동의 자유와 자발성

국민이 자발적이고 대가없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은 공동체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구성원간의 인간존중정신 및 상부상조정신을 바탕으로 하며 봉사자의 자아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는 인간심성의 자연스런 발로이며 자유로운 행동의 영역으로서 강제적(compulsory)일 수 없고 어디까지나 자발적·임의적(voluntary)이어야 한다. 즉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은 원래 국가가 입법으로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입법은 인류사회의 협조를 지향하는 인간개인의 자유의지(voluntariness)가 사회의 공동선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유도·조성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입법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국민에게 사실상 강제한다든가, 역으로 입법에 포함되지 않은 종류·범위의 자원봉사활동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사회적 보호의 밖에 존재한다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아니된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의 수행과 이익부여를 부당하게 결부시킴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유도·조성이 사실상 강제성을 띠게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⁷⁶⁾

2) 사회복지와 공공이익에 대한 공적 책임 우선

자원봉사활동의 영역·대상이 주로 이웃과 공동체의 어려운 문제와 사회·경제적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발생된 제반 사회문제라고 할 때에, 이들 영역에서의 복지수요의 충족과 사회공동이익의 증진은 일차적으로 국가·지방단치단체의 책임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복지국가주의 내지 적극적 행정국가주의 아래에서 우리나라로 장애인, 아동, 편모자 및 노인 등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제도 및 일반 국민의 생활보장, 의료보장, 재해보장 및 고용보장을 위한 제반 사회보장정책을 제도화하고 있고, 환경보존, 범죄예방, 재난관리, 청소년선도, 교통문제, 교육문제 및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법제도와 행정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이념에 따라 국민의 복지와 공공이익에 대하여 충분한 행정(공적)서비스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6) 예를 들어 학교생활에서부터 자원봉사정신을 함양한다는 취지에서 고교내신성적에 자원봉사경력을 반영한다는 교육당국의 입시정책 발표는, 법적으로는 자발적인(voluntary) 봉사활동이라고 할지라도 대학입학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상 강제성을 뺄 수밖에 없다고 볼 때, 이는 「의무봉사」이지 「자원봉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웃과 지역사회등 공동체의 복지와 공동이익을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이와 같은 공적 책임을 완수한 다음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자원봉사활동은 이와 같은 공적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그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의 일차적 책임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 및 공적서비스의 개선없이 주민의 자원봉사만을 활성화하는 것은 국민의 복지·안전·공동이익의 증진을 국민의 책임에 떠맡기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 자원봉사활동진흥입법의 체계

전술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법의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되었었다.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진흥입법과 그 밖의 공공이익분야의 자원봉사진흥입법을 별도의 개별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복지분야뿐만 아니라 공공이익과 관련된 분야까지 포함한 특별단일법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 문제는 1987년 보건사회부가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제도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의 제정을 시도하였다가 정부부처간 합의가 안되어 유실되었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보건사회부의 입법안에 대하여 범죄예방과 청소년선도 등의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을 느낀 검찰과 내무부등 다른 부처는 단일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후 계속하여 환경감시, 범죄예방, 청소년선도, 질서유지 등의 분야에 대한 자원봉사를 포함하는 단일법 제정의 주장이 다른 정부부처에서 제기되고, 선거관리업무 및 선거운동에 자원봉사자의 필요성을 느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야당에 의하여 그 범위의 확대가 요구되었었다. 이러한 중 보건사회부는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의 육성·지원할 별도기구 설치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각종 사회적 편의를 제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94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환경처·교육부등과 협의하였다. 그러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건사회부안에 반대한 내무부는 별도로 자체 특별법시안까지 마련해 놓았었다.⁷⁷⁾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사회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공익분야를 포함하는 특별단일입법안이 나왔다. 자원봉사를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그 활성화를 위하여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하나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먼저 제기하고 여당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보건사회부의 입법안은 철회되고 민

77) 중앙일보, 1994. 8. 21, 3면.

자당과 민주당이 각각 단일법으로서 「공익자원봉사진흥법안」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여야당의 입법안의 체계에 대하여는 현재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진흥법의 입법체계의 문제와 제도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자원봉사활동의 종류·범위의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환경·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문제를 공권력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이 문제들의 해결에 주민의 참여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민간운동 또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그 문제해결에 동참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지역사회봉사)⁷⁸⁾은, 자원봉사의 교육훈련·조직화·활동방법 등이 잘 개발되어 있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활동(사회복지봉사)과, 그 활동방법·활동주체 및 그 결과에 대한 평가등에서 다소 이질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일정한 지원·혜택을 예상할 때에, 소위 범죄예방, 청소년선도, 환경감시, 재난관리 등과 같은 무형적·비계량적인 활동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산정하여 어느 정도로 지원·혜택을 행할 것인가라는 어려움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미국의 「국내자원봉사법」 및 「국가·지역사회봉사법」 등과 같이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활동진흥법(사회복지봉사법)과 국가·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진흥법(지역사회봉사법)을二元化하여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⁷⁹⁾ 그런 점에서 보건사회부가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자원봉사진흥법을 준비한 것은 결코 잘못된 접근은 아니라고 본다. 단일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건사회부안과 같이하면 자원봉사가 필요한 분야마다 개별입법들이 양산되어 법체계의 혼란과 자원봉사활성화에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한다.⁸⁰⁾ 그러나 사회복지분야를 제외한 범죄예방·청소년선도·질서유지·환경감시 등의 문제는 산업화·도시화가 놓은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으로서, 이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지역사회봉사)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⁸¹⁾

78) 이를 보통 「공익분야의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사실 「공익」이라는 불확정 개념에는 「사회복지」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익분야의 자원봉사」를 「秩序奉仕」, 내지 「地域社會奉仕」라고 하고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를 「社會福祉奉仕」라고 일용 구분하는 것이 어떨까한다.

79)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는 보건사회부안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하고, 양당이 발의한 법안은 소위 공익분야의 자원봉사활동(지역사회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으로 한다는 것이다.

80) 중앙일보, 1994. 8. 21, 3면.

81) 입법체계에 대한 본 연구자의 의견은 일단 보류하고,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범죄예방 등 소위 공익분야까지를 포함하는 단일법체계인 여야당안이 입법되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단일법체계를 취하면서 민자당안의 「중앙자원봉사진흥위원회」와 민주당안의 「자원봉사활동지원위원회」의 주무장관을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이 사회복지자원봉사의 주무장관도 되거나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역사회자원봉사의 주무장관도 되어 오히려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자원봉사법과 지역사회자원봉사법으로 이원화하면 자연스럽게 전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하고 후자는 내무부장관이 관장하게 될 것이다.

2. 입법목적과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

민자당안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함으로써 국민상호간의 협동정신을 함양하고 지역사회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제1조)”에 입법목적으로 하여, 자원봉사활동은 “참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도우며 이웃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발전 및 공동복지를 위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봉사자의 자기실현 및 사회의 공공이익을 증진하는 이념하에 수행되어야 한다(제2조)”고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안은 “각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원봉사이념을 확산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지원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은 “봉사정신과 참여정신을 바탕으로 이웃과 공동체의 어려운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함으로써, 공동체적 연대감을 고취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 민간자율의 영역을 확대하여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정착케 하며 봉사활동참여자의 자아실현을 고양한다는 이념하에 수행되어야 한다(제2조)”고 역시 그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양당안의 입법목적과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에는 표현방법 이외에 큰 차이가 없다.⁸²⁾ 즉, 양당안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또는 자원봉사이념을 확산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 및 복지증진 그리고 자원봉사의 건전한 발전에 법제정의 목적을 두고, 자원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참여자의 자아실현 및 사회의 공공이익을 증진하는 이념하에 수행되어야 한다고 그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양당안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여 가치의 보존과 창조활동”이라는 목적을 추가하고, “시민에게 자원

82) 굳이 양당안의 차이를 지적한다면, 민자당안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에서 지역사회발전을 복지증진에 우선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민주당안은 양자를 동일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차이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및 범위·종류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 제4조) 및 주무장관에 관한 규정(민자당안 제7조, 민주당안 제10조)에서도 나타난다.

봉사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기본이념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⁸³⁾

3.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지원대상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종류

(1) 법안의 내용

먼저, 민자당안은 「자원봉사활동」이란 “기본이념에 따라 공익·복지사업 수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이외의 반대급부없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활동”(제3조제1호)을 말하며, 그 「범위」는 ①환경·교통·교육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 ②각종 사회복지와 국민보건증진에 대한 봉사활동, ③범죄예방·청소년 선도·재난관리·질서유지 등에 대한 봉사활동 및 ④기타 공익사업수행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등으로 하고(제4조제1항), 그 구체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안은 「자원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제3조제1호)이라고 정의하고, 그 종류는 ①사회복지분야, ②환경보호분야, ③교육분야, ④소비자보호, ⑤청소년선도, ⑥범죄예방, ⑦기초질서제도, ⑧재해구조, ⑨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 ⑩공직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봉사활동 및 ⑪해외봉사활동과 ⑫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수행 또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제1항)

양당안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개념요소는 사실상 같다고 할 수 있으나, 법상 자원봉사활동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범위·종류」에 대하여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민주당안에 “공명선거추진 및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이 특별히 추가되어 있다는 점이다.⁸⁴⁾

(2) 자원봉사활동의 법적 개념

먼저 양당의 법안에서는 모두 자원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 활동에 대

83)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양당의 자원봉사지원법안에 대한 의견, 1994. 12. 1면.

84) 한편 보건사회부 「사회복지사업법개정법률안」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주에 “사회복지봉사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키고(제2조제1항), 「자원봉사활동」을 “사회복지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반대급부없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동조제4항).

한 반대급부 없이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하여 활동의 자발성·무상성을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요소로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다만 그 활동이 “계획적·지속적 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물론 법상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정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과학적 정의가 아니라 입법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상 지원·혜택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정의인 것이다.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일정하게 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지원·혜택의 요건을 정하는 문제를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정의에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요소에 “계획성·지속성”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국민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협소하게 인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⁸⁵⁾

한편, 자원봉사활동은 “공익·복지사업 (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이나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범위·종류」를 다시 명시하고 있다.(각 당안 제4조) 민자당안과 민주당안 그리고 폐기된 보건사회부안 사이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부분이 바로 지원대상이 되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념·범위·종류에 관한 것이었다. 그 쟁점은 앞에서도 밝혔듯이 ①자원봉사활동의 범위·종류를 「사회복지분야」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공익분야」라고 일컬어지는 국가·지역사회의 사회문제 까지 확대할 것인가와 ②「선거관리업무 및 선거운동」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그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3) 소위 공익분야의 자원봉사활동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에서 지원·혜택의 대상이 되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종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사실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복지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활동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자원봉사활동이 주로 고아원·양노원·재활원 등과 같은 사회복지분야에서 활발히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창출이 그들의 개인적 책임보다는 사회구조적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였던 것처럼, 산업화·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공동체사회의 해체와 가치규범의 상실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역사회문제의 해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적 연대감 및 주민참여의 정신을 요구하

85)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앞의 의견, 2면에서는 이 어구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고 있다.

그렇다면 공동체적 연대감과 참여정신 및 봉사정신을 기초로 한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분야는 오늘날에 와서는 환경·교육·재난관리 등 지역사회의 공동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분야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자당과 민주당의 법안이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에 전통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수행에 관한 봉사활동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변화된 사회환경 속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종류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⁸⁶⁾

그러나 이와 같은 공감대 아래에서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법적근거가 되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종류에 「공익분야에 대한 봉사활동」을 포함한 양당의 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선거관련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비록 그 구체적인 범위·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안이 예정하는 지원대상 공익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종류에는 정부의 행정업무분야가 거의 대부분 망라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이들 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고유책임영역과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환경·교통·교육·소비자보호등 지역사회봉사활동과 범죄예방·청소년선도·재난관리·질서유지등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환경·교통·교육·소비자보호 등은 현대국가가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국가의 필수적인 업무분야이다. 환경개선과 환경파괴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는 이미 환경관련입법과 환경처라는 정부조직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할 기본업무이며, 법령과 행정력의 정확한 적용·집행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한다. 교통문제 또한 교통정책의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에 속하는 사항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이와 같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하여 보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환경, 교육, 교통,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자원봉사활동에 떠넘기지 않도록 그 구체적 범위·종류를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범죄예방·청소년선도·재난관리·질서유지 등도 전통적인 국가의 고유업무이다. 특히 이들 분야는 단순히 서비스적인 행정이 아니라 국가가 권력을 수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능이요 의무인 것이다. 이들 분야에 대하여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지만, 이들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는 몇 가지 고려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 즉, 이들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은 구체적인 행동양태를 확정하기 어려우며, 자원봉사자의 신분·자격 등에 대하

86) 위에서 언급한 입법체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한다.

여 복잡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범죄예방 또는 질서유지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은 봉사자의 단순한 노력제공 이외에 필연적으로 그가 일정한 권한·자격을 가져야만 봉사활동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이는 공무원의 권한의 일부를 민간인에게 위임·위탁할 것을 의미하며, 적어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소위 「사회적 덕망과 투철한 국가관」이 있는 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⁸⁷⁾ 이와 같은 봉사활동에는 본인이 원한다고 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활동은 필연적으로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볼 때에, 과연 자율성을 핵심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자원봉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할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도 많을 것이다.⁸⁸⁾ 따라서 범죄예방·청소년선도·재난관리·질서유지 등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더라도 이는 다른 프로그램에 의하여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자원봉사활동진흥법에 의하여 지원과 혜택의 대상이 되는 「자원봉사활동」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공익분야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는, 한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의 관계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구체적 활동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⁸⁹⁾, 그 구체적인 활동방법 및 활동주체에 관한 문제 등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다하였는가라는 불신과, 사회봉사 내지 사회운동·의식개혁운동·생활개혁운동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뿌리깊었다는 점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는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범죄예방·환경감시 등 정부의 고유업무분야에 대해서까지 국민의 자발적인 봉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입법취지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의문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익분야까지 포함하여 입법한다면, 공익분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라도」 그 구체적인 활동의 종류, 주체, 활동방법, 활동의 계량방법, 지원과 혜택의 범위 및 지위남용의 금지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율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의 인력부족 및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자원봉사」라는 이름의 환경감

87) 예를 들어 행정기관의 주도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유지·명망가·이익단체관계자 등으로 조직되는 「청소년선도위원회」, 「주민봉사대」, 「시민자원경찰대」 등.

88) 범죄예방·교통질서 등에 대한 자원봉사자가 직접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의 하나로 이들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배상을 비롯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법해석상의 문제도 발생한다.

89) 현실적으로 공익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분야와 달리 지원·혜택의 근거가 되는 「자원봉사활동경력의 산정」 등의 계량화가 어렵다는 난점도 있다.

시, 쓰레기줍기, 자연보호운동, 교통질서캠페인, 범죄예방, 청소년선도 등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을 전개할 때에, 이를 「자원봉사활동」과 「시민운동」 내지 「민간운동」 중 어느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활동은 대부분 개인적인 참가보다는 주로 지역사회운동단체 또는 민간운동단체에 의하여 수행될 것이기 때문에, 입법론상으로는 이를 개별 자원봉사자의 지원·혜택의 부여에 초점을 맞추는 「자원봉사진흥법」보다는 민간운동단체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민간운동지원에관한법률」에 포섭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⁹⁰⁾

(3) 선거관리업무 및 선거운동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문제

한편 정부는 통합선거법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자원봉사제도의 조기정착이 깨끗한 선거풍토조성의 지름길이라고 보고 일정기준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대학학점을 부여하고 기업입사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자원봉사제도 활성화방안」을 구상한 적이 있었다.⁹¹⁾ 즉 선거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유급운동원의 대폭축소로 인하여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이와 같은 구상을 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민자당안에서는 선거관련 자원봉사활동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민주당안에서만 자원봉사활동의 종류에 “공명선거추진 및 선거운동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분명 건전한 민주사회의 정착과 시민교육을 위하여 선거관리 및 선거운동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바람직할 것이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이 표방하는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등 공명선거추진을 위하여는 시민들이 보수를 바라지 않고 선거과정에 참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선거관련 자원봉사활동’도 굳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한다면 위 양당안의 「공익분야의 자원봉사활동」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명선거추진을 위한 선거관리업무에의 자원봉사활동’과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에의 자원봉사활동’을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문제

먼저 ‘공명선거추진을 위한 선거관리업무에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보기로 한

90) 민자당과 민주당은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과 동시에 「민간운동지원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와 민간운동의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부록2』 참조)

91) 세계일보 1994.3.14, 1면.

다. 선거관리업무는 분명히 법안상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종류에 해당하는 환경·교통·교육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범죄예방·청소년선도·재난관리·질서유지 등에 대한 봉사활동과 같이 직접적으로 주민의 재산 내지 생활상의 이익을 보호·증진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고유업무를 도와주는 활동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선거관리업무는 공익의 범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익’의 개념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선협적으로 다른 어떤 이익과 구별되는 개념징표를 갖고 있는지는 법학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서, 편의상 개인적 이익이 아닌 사회적 가치·이익 정도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선거관리업무를 단순히 행정업무라고 보아 거기에 아무런 가치이입을 시키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선거’란 민주주의의 그 자체이며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자를 결정하거나 교체함으로써 국민의 뜻에 의한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지배를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한편 선거는 국민의 무관심, 금력·폭력등의 개입으로 공정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지배자의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도구로 타락할 우려도 있다. 선거가 가지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선거관리업무는 단순한 행정업무에 그치지 않고 ‘선거의 공명성’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행정업무라고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선거관리업무의 ‘공익성’은 범죄예방·질서유지 등의 ‘공익성’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은 ‘공명선거추진’이라는 공직선거법상의 공익을 증진하는 활동이라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로 선거가 빈번해지고, 여야당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1995년 6월 27일에는 4개 지방자치단체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로 인하여 폭증할 선거관리업무에 연인원 6만여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으로는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도,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다면 법이 지향하는 ‘선거의 공정성’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요청에서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어떤 다른 분야보다 절실하게 요청된다.⁹²⁾

92) 공직선거법 제10조에서는 ‘사회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논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사회단체등을 통한 선거관리업무의 자원봉사활동의 길이 봉쇄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선거운동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문제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은 위의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자원봉사와 그 궤를 달리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선거운동을 포함한 선거과정 자체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공익적 가치를 가지지만, ‘특정 정당·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은 특정 정당·후보자의 당선이라는 「사적 이익」에 봉사하는 것으로서 일단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선거운동은 국민의 정치 참여의 장으로서 그것을 통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얻고, 특히 선거운동에 대한 자원봉사는 본인과 정치적 이념과 정견이 같은 후보자를 지원함으로써 그 자신이 성취동기를 찾게되는 하나의 정치적 행위이다. 선거운동 자체가 자신의 정치 행위이므로 여기에 「자원봉사」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으며, 「선거운동에 대한 자원봉사」=「선거운동」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선거관리업무의 경우와 달리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원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은 지원과 혜택의 대상이 되는 자원봉사 개념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때문에 민주당안에서도 선거운동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는 일정한 사회적 지원과 혜택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³⁾ 이렇게 볼 때, 민주당안에서 일반 자원봉사자와 달리 취급하면서도 선거운동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을 반드시 「자원봉사활동진흥법」에 넣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제58조제2항)”고 하고, 유급선거사무원의 수를 제한하고(제62조제2항) 있다. 이를 조항들을 볼 때, 선거법상으로 이미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정당·후보자를 위하여 무급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수등의 아무런 댓가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자」=「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자원봉사자」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선거운동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은 이미 현행 선거법상 그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도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면 공직선거법시행령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도 충분히 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94)⁹⁵⁾}

93)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단체는 이 법에 의한 자원봉사단체로 보지 아니하고(제3조제3호), 선거운동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는 실비등의 지급이 제외되고(제25조), 공직임용시의 혜택이 부여되지 아니하며(제30조제1항), 진학심사에서의 혜택도 제외된다(제32조).

94) 미국의 「국내자원봉사법」 및 「전국·지역사회봉사법」은 모두 동법들에 의한 프로그램 및 기금은 “공직자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활동”에 직접·간접적으로 재정지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42 U.S.C.A. §5043), 양법의 프로그램중에는 ‘선거운동관련 프로그램’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95) 한국시민단체협의회의 앞의 의견(4면)과 동 협의회의 관변단체육성특별법 폐지 및 민간운동관련법안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지원·감독기구

(1) 법안의 내용

민자당안에 의하면,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정책수립, 봉사단체의 육성, 경력인정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는 「중앙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원봉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자원봉사 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제7조제1항, 제8조) 중앙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내무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총괄·조정하도록 하였다.(제7조) 또 구체적인 자원봉사활동의 등록·교육훈련·배치 등을 비롯한 관리, 지원·혜택 등의 업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자원봉사단체에 위임 가능)가 직접 행하도록 하고 있다.(제2장, 제3장 및 제4장 참조) 이와 같이 민자당안의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지원·감독등의 업무는 「내무부장관」을 주관부처로 하여 「각 행정기관」이 직접 주도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안은 국무총리실에 국정에 반영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주요정책, 자원봉사재단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재단의 감독과 기타 주요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자원봉사활동지원위원회」를 두고 있다.(제7조제2항, 제10조) 자원봉사활동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경제기획원장관을 부위원장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내무부·법무부·교육부·환경처장관과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인을 위원으로 구성된다.(제10조)⁹⁶⁾ 또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감독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독립된 법인인 「자원봉사재단」을 설립하도록 하였다.(제7조제1항) 동 재단은 이사회, 감사, 자원봉사단체대표자회의, 기금관리위원회, 사무처 등의 기구로 구성되며, 자원봉사단체와 개인의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한

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의견(1994.11.25, 4면)에서는 “현재 선거관리인력으로는 선거관리 및 선거부정감시활동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면 공명선거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자원봉사는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이므로 자원봉사의 원래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성격이 농후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96) 민주당안은 「자원봉사활동지원위원회」와 별도로 공명선거추진과 선거운동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명선거추진활동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7조제2항, 제11조)

교육·훈련, 자원봉사지도자의 양성, 자원봉사자 배치에 관한 수급조정, 자원봉사활동 경력증명서의 발급, 자원봉사기금의 조성·관리와 기부금품의 모집,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제8조 제12항)⁹⁷⁾ 또 정부의 행정각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는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업무를 담당하는 자체부서를 지정하도록 하였다.(제7조제3항)⁹⁸⁾

한편, 자원봉사단체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하기 협의체기구로서, 민자당안은 자원봉사단체들이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민자당의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해당하는 민주당의 조직은 자원봉사재단의 기구로서 「자원봉사단체대표자회의」를 규정하고 있다.(제8조제7항, 제8항)⁹⁹⁾¹⁰⁰⁾

<표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지원·감독 체계

	민자당안	민주당안
기본정책수립 및 중요 사항심의(정부기구)	중앙자원봉사진흥위원회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자원봉사활동지원위원회
자원봉사활동의 관리·지원·감독	국가·자방자치단체 (자원봉사단체)	- 자원봉사재단 (지부) (자원봉사단체) - 행정관청 : 담당부서
자원봉사단체의 조직화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자원봉사단체대표자회의 (자원봉사재단의 기구)

97) 마찬가지로 민주당안은 「자원봉사재단」과 별도로 공명선거추진과 선거운동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감독하기 위하여 「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7조제1항, 제9조)

98) 보건사회부안에서는 기존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확대개편하여 중앙기구 산하에 「시도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제27조제1항)

99) 보건사회부안에서도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상호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관련단체들이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8조)

100) 보건사회부안에서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자원봉사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여 ①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 ②자원봉사활동의 신청접수 및 지원관리, ③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개발, ④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계통 및 홍보, ⑤기타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1조).

<표 2>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기구의 비교

	민자당안	민주당안
명 청	중앙자원봉사진흥위원회	자원봉사활동지원위원회
소 속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위원장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보좌)	국무총리 (부: 경제기획위원장관)
위 원	관계공무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보사부장관(상임), 내무부·법무 부·교통부·환경처 장관, 학식 과 경험을 가진 자
기 능	기본정책 수립, 봉사단체 육성, 경력인정 등 중요사항 심의	자원봉사재단에 대한 국고보조 ·감독, 주요정책사항 심의의결
지방조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심의)	없음

(2) 자원봉사진흥기구의 조직구성과 운영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임의적인 봉사활동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조직화할 수 있는 조직·기구가 필요하다. 즉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육성·지원할 별도의 조직과 기구를 통하여 자원봉사수요자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배치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봉사의 육성·지원기구는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자원봉사활동의 방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각종 세미나·교육·훈련등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육성의 책임을 지는 한편 자원봉사에 대한 경력인정시 이의 등록·관리를 맡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지원·감독을 위한 조직·기구로는 크게 정부 입장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정책등을 수립·심의하고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구」와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적인 「민간기구」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¹⁰¹⁾

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지원기구의 설립과 그 운영주체를 자원봉사활동의 본질

적인 면에서만 생각한다면 자발적인 주민에 의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외국의 자원봉사활동의 역사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원봉사의식이 부족한 우리 현실을 극복하고 복지사회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가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기구의 설립·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무총리실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또는 「자원봉사활동지원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구체적인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지원·감독의 업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가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독립된 「민간조직」에 맡길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어떤 조직·기구의 구성이 자원봉사활동의 이념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지원·감독에 바람직한가에 있다.

그런데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양당안의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지원등의 기구를 비교하면, 민자당안의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업무가 민주당안에서는 「자원봉사활동지원위원회」와 독립법인인 「자원봉사재단」로 이원화되어 있고, 또 구체적인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업무를 민자당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민주당안에서는 「자원봉사재단」이 담당하게 되어 있다. 즉, 민자당안은 「자원봉사진흥위원회--행정기관」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진흥 및 지원·감독하려는 구상인데 대하여, 민주당안은 「자원봉사활동지원위원회--자원봉사재단」을 통하여 진흥·지원·감독을 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기구

민자당의 「자원봉사진흥위원회」와 민주당의 「자원봉사활동지원위원회」의 모두 국무총리실에 두고 있으나, 그 기능 및 위원의 구성 및 실무 관장부처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민자당안은 「중앙자원봉사진흥위원회」와 민주당안의 「자원봉사활동지원위원회」 모두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며, 봉사단체의 육성, 경력인정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거나 또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정에 반영할 주요정책, 자원봉사재단에 대한 국고보조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정부가 직접 관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또는 자원봉사활동지원위원회의 역할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하는 「정책자문기구」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¹⁰²⁾

101) 미국의 경우에 ACTION Agency(廳), 「국가·지역사회봉사공단」(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및 Point of Light Foundation 등이 있다.

특히 민자당안이 진홍위원회의 주무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상대적으로 소위 공익분야에 치중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복지행정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내무행정 내지 경찰행정에 대한 지원으로 그 성격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다. 반대로 민주당안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위원회의 주무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이 강조되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하지만, 여기서도 공익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이 소홀히 취급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¹⁰³⁾ 그리고 진홍위원회의 위원을 「관계공무원」이라고 막연하게 규정하기보다는 보건사회부·내무부·교육부·법무부·환경부 등 관련부처의 장관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감독기구

민자당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원봉사활동의 관리·지원·감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민주당안은 「자원봉사재단」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복지행정 내지 공익행정의 보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수요자와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의 실질적 연계고리가 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는 일선 행정기관에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만 두고 실질적인 지원·감독업무는 민간조직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다만 민주당안에서도 자원봉사재단의 이사회와 자원봉사단체대표자회의와의 관계등 자원봉사재단의 역할·구성이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¹⁰⁴⁾ 또 재단의 「長」 및 임원을 「자원봉사단체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고(제8조제8항) 국회가 재단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제12조), 이는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확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통제를 배제하고 순수한 민간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지원·감독하겠다는 점에서는 이해가 가는 바이다. 그러나 자원봉사재단의 업무(제8조제1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재단이 민자당안의 진홍위원회 및 국가·지

102)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양당의 자원봉사지원법에 대한 의견, 2면.

103) 자원봉사진홍입법의 주영역을 「사회복지분야」에 두어야 한다는 이념적 요청에서는 보건사회부가 주무부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실 소위 「공익분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는 해당 관련부처(내무부가 총괄)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앞에서 자원봉사진홍입법의 이원화를 주장한 것이다.

104)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앞의 의견, 2면.

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중요 업무를 모두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사실상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행정기구」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자원봉사재단의 업무의 공공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재단을 민법상 재단법인 보다는 「공법상 법인」으로 하여 「장」은 자원봉사단체대표자회의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임원의 선출과 재단의 업무에 대하여는 정부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는 방향에서 입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¹⁰⁵⁾

한편,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지원기구는 위와 같이 중앙단위의 기구 이외에, 오히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즉, 주민의 생활단위인 시·도 또는 시·군·구에 그 기구 또는 조직의 구성·활동이 강조되어야 한다.

3) 자원봉사단체의 협의체기구

민자당안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들이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9조), 민주당안에서는 자원봉사재단내에 「자원봉사단체대표자회의」라는 심의·의결기구를 두고 있다.

생각컨대, 각 자원봉사단체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상호교류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원봉사단체들이 협의체기구를 만드는 것도 일종 이해할 수 있는 바이다. 특히 민자당안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의 관리·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행정관청이 담당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책수립 또는 관리·지원 등에 관여할 수 있는 민간기구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리·지원업무 등을 정부의 통제하에 두지 않고 자원봉사재단과 같은 민간조직에 맡긴다면 굳이 이와 같은 협의체조직을 법률이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¹⁰⁶⁾

105) 미국의 「전국·지역사회봉사공단」의 이사장 및 주요임원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앞의 III. 1. 참조. 한편, 민주당의 자원봉사재단에 대응한 지원기구로 한국시민단체협의회는 「중앙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상정하고, 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위원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앞의 의견, 4면 참조)

106)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앞의 의견, 4면. 다만, 정부의 통제·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한 자발적 조직의 구성까지를 막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5. 자원봉사자의 등록 · 교육훈련 · 배치 등

(1) 법안의 내용

민자당안은 법상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이 때 국가·지방자치단체(자원봉사단체에 위임가능)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제8조), 자원봉사활동의 수요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요청하면 자원봉사자를 배치받을 수 있고(제15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등록자원봉사자중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자원봉사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제1항) 이와 같이 민자당안은 자원봉사자의 등록 · 교육훈련 · 지원요청 · 배치 · 자원봉사증서 교부 등을 모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맡도록 하고 있다.¹⁰⁷⁾

이에 대하여 민주당은 법상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재단」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제1항, 제4항) 이 때 자원봉사재단(자원봉사단체에 위임가능)은 등록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제16조),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재단 또는 소속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제19조) 자원봉사활동경력증명서는 일정기간 자원봉사활동은 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소속 자원봉사단체의 확인을 거쳐 자원봉사재단이 조사·확인·발급한다.(제20조)¹⁰⁸⁾ 이와 같이 민주당안은 자원봉사자의 등록 · 교육훈련 · 지원요청 · 배치 · 자원봉사활동경력증명서교부 등을 모두 자원봉사재단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맡도록 하고 있다.

107) 이와 같은 민자당안에 대하여는 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의 참뜻을 왜곡하고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중앙일보, 1994.12.15, 2면)

108) 보건사회부안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고 (제32조), 이 지원기관이 자원봉사증서를 발급하고(제36조제1항), 특히 자원봉사증서의 소지자는 필요한 경우에 타인에 우선하여 자원봉사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소위 「자원봉사저축제도」 제36조 제2항)

<표 3> 자원봉사자의 등록·교육훈련·배치등의 담당기관 비교

	민자당안	민주당안
자원봉사자의 등록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재단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재단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 지원요청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재단 또는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 지원·배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재단 또는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지도자 배치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재단 및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증서 교부발급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재단 (자원봉사단체, 재단, 행정 관청 등의 조사·확인)

(2)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과 효율적 관리·운용

사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등록, 교육훈련, 배치 및 자원봉사증서교부 등은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과 직결되는 것들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경직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비록 무분별하고 허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규제하고, 대민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수요자와 자원봉사간의 창구역할 또는 실질적인 연계고리역할을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들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혜택의 업무와 연계시켜 볼 때,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를 담당하기보다는 독립된 민간조직이 자원봉사활동의 등록부터 지원·혜택에 관한 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업무에 대하여 국가의 적정한 감독을 받는 「자원봉사재단」과 같은 민간조직에 의한 등록·교육훈련·배치 등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의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담

당부서를 지정하여 자원봉사재단 및 자원봉사단체와 유기적인 연계를 갖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민주당안 제7조제3항 참조)

6. 자원봉사활동 및 그 활성화와 관련된 재원의 확보

(1) 법안의 내용

민자당안에서는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재원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제17조제1항)고 규정하고, 그 재원을 정부의 「보조금예산」으로 하고 있다.(동조제2항) 이 규정 이외에는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다만 간접적으로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제19조), 다른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안에서는 「제4장 자원봉사기금과 기부금등」에서, “자원봉사재단의 설립·운영에 대한 자금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재단에 「자원봉사기금」을 설치”(제21조제1항)하고, 그 기금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그 기금은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자원봉사자보험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동조제2항, 제3항) 따라서 자원봉사재단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고, 이 때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기로 하였다.(제22조) 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회원과 별도의 후원회원을 두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23조)

(2)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보조금, 기부금 및 후원금의 문제

자원봉사활동은 맷가없이 봉사자가 자기의 노력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써 일반적으로 재원·자금등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개인이 봉사활동과정에서 일정한 경비를 사용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자원봉사단체의 운영비용 또는 봉사활동경비가 필요하거나, 입법안이 예정하는 일정한 지원 및 사회적 혜택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의 직접적인 관건이 된다.

생각컨대,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는 자신들의 부담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보조금등을 지급할 수도 있으며, 여러 사정 때문에 직접 자원봉사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기왕에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법을 제정한다면 이와 같은 재원의 문제에 대하여도 일정한 규정이 있을 필요가 있다.

즉,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등에 대하여는 당연히 세법상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민자당안 제19조) 뿐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자원봉사단체 외부에서도 기부금 및 후원금을 조성하는 것도 금지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민자당과 민주당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민자당안 제17조, 민주당안 제24조) 그러나 민자당안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누구인지 불명확하고, 민주당안은 이를 「자원봉사재단」에 지급하여 「자원봉사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도하여 개별적으로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을 「官主導」로 흐르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의한 출연금·보조금을 독립된 민간조직의 「기금」의 형태로 관리·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¹⁰⁹⁾

또한 자원봉사단체가 기부금·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들 필요가 있다. 다만 기부금품 및 후원금에 관하여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등에 의한 규제가 적용될 우려가 있으나,¹¹⁰⁾ 현재 민자당과 정부에 의하여 「기부금품모집금지법개정법률안」¹¹¹⁾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¹¹²⁾이 국회에 제

109)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앞의 의견 3면.

110) 현행 「寄附金品募集禁止法」은 “누구든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제3조제1항 본문)고 못박고, 법이 정하는 경우(동항 단서)에 한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무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다고 한다.(『부록 3』 참조) 또 현행 「社會福祉事業基金法」은 “보건사회부장관은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게 할 수 있다”(제7조제1항)고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도 민간조직이 임의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 하였다.(『부록 4』 참조)

111) 동법안은 1951년에 개정되어 1970년까지 2차례 개정 후 지금까지 별다른 보완없이 운영됨에 따라 법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전문개정하려는 것으로, 각종 기부금품의 모집대상·허가절차·사용방법 및 처벌규정을 대폭 정비하여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기부금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부록 3』 참조) 한편 종전의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을 폐지하고, 이 개정안도 민간단체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사실상 규제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관변단체육성특별법폐지 및 민간운동관련법안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의견, 1994. 11 5면)

112) 동법안은 그 동안 관주도의 성금모금 및 관리·운용을 지양하고 민간단체가 이웃돕기성금을 직접 모금·배분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민간의 사회복지참여를 활성화

출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관계 제·개정 법률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법률의 규제를 받더라도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민간운동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경우에 자원봉사단체로서의 입장과 민간운동단체로서의 입장은 모두 갖게 되는데, 이 때 이러한 단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는 민자당과 민주당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안」¹¹³⁾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관하여도 법안심의 과정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7.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보상체계

(1) 법안의 내용

민자당안에 의하면, ①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제17조제1항), ②자원봉사단체가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대여·사용·수익하게 하며(제18조), ③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제19조), ④자원봉사활동 수혜기관은 자원봉사자의 재해에 대한 보상금 및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비용등을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다.(제20조,제24조) 이 이외에 일정한 경력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유사분야의 근무경력으로 인정(제22조), 공직임용·취업·진학등에 대한 혜택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21조,제23조)

민주당안도 ①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재단·지부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보조(제24조), ②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우선적 또는 무상 대여(제26조), ③자원봉사재단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등록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수행 중의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제27조) 및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비용등의 지급(제25조), ④기부금품의 기부자와 기부받은 자원봉사재단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및 지방세법상의 면세(제22조제3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이외에 일정한

하려는 것이다. 동법안은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폐지하는 대체입법이다.(『부록 4』 참조)

113) 민자당 이영창의원 외, 民間運動支援에 관한法律案(의안번호 933), 1994.11. 21, 민주당 박상천의원 외,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963), 1994. 12.1. 양당은 그 현실적인 시각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 동안 관변단체라는 이름으로 관주도에 의한 민간운동을 지양하고 민간운동을 순수하게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운동단체의 순수성·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민간운동단체의 보호·육성 내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법안들을 제안하였다. 동법안들에 의하여 현행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및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법률 등이 폐지되는 것으로 하였다.(다만 민주당안은 시행 즉시 폐지, 민자당안은 공포 2년후 폐지) (『부록 2』 참조)

경력의 자원봉사자의 유사분야에서의 유급근무경력 인정(제29조), 공직임용·취업·진학등에 대한 혜택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다만 민주당안에서는 선거운동자원봉사활동에는 이들 사회적 혜택중 일부를 배제하고 있다.

<표 4>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과 혜택등의 비교

	민자당안	민주당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수혜자 불명)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수혜자 : 재단과 지부)
국·공유재산의 우선적 대여등	자원봉사단체 (대여·사용·수익등)	자원봉사재단·지부, 자원봉사단체 (대여)
조세감면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상 임의적 감면)	기부금품을 기부한 자와 기부를 받은 자원봉사재단 (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상 기부금품상당액 면제)
자원봉사활동수행중의 재해에 대한 보상	재해보상금·휴업보상금 (지급주체 : 자원봉사활동의 수혜기관의 부담)	자원봉사재단 또는 자원봉사단체 : 보험가입
포상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자의 교육·연구·진흥에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경력 인정	특정분야에서 일정기간 (유사분야 근무경력)	특정분야 일정기간 (유사분야 유급근무경력)
사회적 혜택	공직임용, 취업, 진학 등	공직임용(의무), 취업, 진학
설비등의 지원	지급주체 : 자원봉사의 수혜기관 및 단체	지급주체 : 자원봉사재단, 지부, 자원봉사단체
기타	자원봉사의 날 지정	-자원봉사활동의 교과과정 채택 (초중고) -대학에서의 학점부여 -자원봉사주간의 설정

(2)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혜택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는 사회적 캠페인만으로는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그러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동기부여 즉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주장되어 왔다. 그 동기부여 또는 인센티브로는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편익을 통한 보상체계가 주장되어 왔다. 보다 구체적인 사회적 편익제도는 크게 경력인정·보험제도·저축제·포상제 등을 들 수 있다.¹¹⁴⁾ 경력인정은 자원봉사자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경우 동일한 분야에서 유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만큼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이고, 보험제도는 자원봉사자가 활동중에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장치이다. 또 자원봉사저축제 및 포상제는 현혈증서와 같은 저축제를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의 미래를 보장하고 포상제를 통하여 자원봉사유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공적을 인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위의 민자당과 민주당안에는 이상에서 언급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사회적 편익제도가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몇가지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 먼저, 민자당안은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구체적인 지급대상자를 정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의 보조사업계획서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예산으로 편성하여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면, 이는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 및 관주도의 배제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자원봉사재단」과 같은 독립된 민간조직에 지급하여 「기금」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에 합치하지 않을까 한다.

또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수행중에 상처를 입거나 사망한 때 또는 불가피하게 타인에게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때 또는 가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때의 「보상금」의 지급을,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등 자원봉사활동의 수혜기관의 부담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국가가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거나¹¹⁵⁾, 자원봉사재단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보험제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익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을 예상하면 그 수혜기관이 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예산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

114) 보건사회부, 주요업무보고, 1994. 10.

115)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양당의 자원봉사지원법안에 대한 의견, 4면.

할 것 같지만,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활동까지 예상한다면, 이는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적인 「수익자부담의 논리」에 불과하고 오히려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원래 자원봉사활동의 수요자가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분야의 비영리기관(법안 제3조제4호 참조)이 대부분이라고 본다면, 그 수혜기관에 재해보상금을 부담시키기 보다는, 국가배상 내지 국가보상책임을 원용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화하고 주도하는 자원봉사재단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책임으로 하되 정부의 보조금, 출연금, 기부금 및 후원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¹¹⁶⁾

8. 자원봉사활동의 수칙

민자당안은 자원봉사활동은 정치적인 목적이나 자원봉사의 기본이념에 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제6조),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임직원등 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원봉사수요자에 관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제11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 중앙자원봉사진흥위원회로 하여금 기본이념에 충실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수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이에 대하여 민주당안은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자원봉사활동수칙」의 종류를 명문화하여 정치활동의 금지, 비밀누설의 금지, 대가수수의 금지 등 3개항을 규정하였다.(제6조제1항) 정치활동의 금지에는 자원봉사단체(임직원 포함)는 어느 경우에도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하고, 후보자·장당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이외의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 수행중'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에 대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제6조제2항)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 및 공익분야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사회의 유지와 공익증진에 기여하지만, 한편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수행 중에 수요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지득하게 되고, 잘못된 경우에는 수요자로부터 금품수수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과거 민간운동단체 등의 자원봉사활동이 자원봉사의 이름을 빌어 정치적 행위를 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온 경험도 있다. 그리하여 양

116) 사회복지분야이든 공익분야이든 자원봉사활동의 수요자에 대한 「엣가없는 봉사활동」이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이므로 「수혜기관」에 어떤 부담을 지우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본다.

당은 모두 자원봉사활동의 수칙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이다.

따라서 양당안이 모두 자원봉사활동의 수칙을 직접·간접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하에 그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그 규정방식으로 민주당안과 같이 법률에 명문으로 구체화시킴과 동시에 민자당안과 같이 중앙자원봉사진흥위원회 또는 자원봉사활동지원위원회 또는 자원봉사재단 등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수칙」을 제정하게 하는 명문의 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V. 결 어 : 입법방향

오늘날 우리는 「자원봉사」라는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듯하다. 정부, 정치권, 기업 및 대학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제도를 발표하고 있고, 그 동안 순수한 자원봉사활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민간운동단체까지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노정된 제반 문제가 국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분명히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하여 법제도를 구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이 자원봉사의 정신과 이념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하나의 유행병처럼 사회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민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운동에 터잡지 않는 자원봉사활동은 그 자체가 사상누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활성화하기 위한 법제 및 정책은 바로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민간운동의 활성화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 관리만을 목표로 하여 관료적·획일적인 제도운영에 치중한다면 모처럼 일기 시작한 자원봉사활동의 분위기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민자당과 민주당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입법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법의 체계

자원봉사활동의 이념적 기초, 수행방법 및 주무부처등의 문제에 있어서 다소 이질적인 사회복지분야와 공익분야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이 공익분야에 치중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진흥입법체계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의 사회복지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하고 소위 「사회복지자원봉사법」, 여야당이 제안한 법안은 공익분야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만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자는 것이다(소위 「지역사회자원봉사법」).

(2) 지원대상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종류

현재의 법안과 같이 단일입법체계를 취하려는 경우에도, 공익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종류 뿐만 아니라 활동의 추진방법·계량방법·지원·혜택의 범위·지위남용금지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익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은 대부분 민간운동단체에 의한 지역사회운동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지원등에 관하여 「민간운동지원에관한법률안」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선거관련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의 문제

공명선거추진을 위한 선거관리업무에의 자원봉사활동은 위 공익분야의 자원봉사활동에 포함시킬 수 있는 공익적 활동으로서 지원과 혜택의 대상이 되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리적·현실적 요청이다. 그러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을 「공익자원봉사진흥법」이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운동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은 그 자체가 가지는 정치적·현실적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위 양당안이 예상하는 사회복지와 공익분야의 자원봉사활동과 궤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행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충분히 선거운동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이 제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지원·감독기구의 문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진흥기구 및 지원기구등이 필요함을 인정하지만, 이를 기구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과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하는 정부기구를 제외하고는 민간주도에 의한 진흥·지원·감독기구의 형태로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이 정부주도에 의하는 것보다 민간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의 이념에 합치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그 구성·기능에 대하여 일부 보완을 전제로 하여 「자원봉사재단」과 같은 민간조직의 형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부기구에 있어서도 주무부서를 내무부보다는 보건사회부로 하거나, 사회복지분야와 공익분야의 주무부서를 이원화하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보다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5) 자원봉사자의 등록·교육훈련·배치등의 문제

마찬가지로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등록·교육·훈련·배치등의 문제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민간조직인 「자원봉사재단」과 같은 조직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아가 전문적인 자원봉사요원의 교육훈련기관을 양성하고, 자원봉사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교육훈련·배치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6)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재원확보

자원봉사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게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단체등이 직접 기부금품·후원금 등을 모집할 수 있게 관계법령이 정비될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민간운동지원에관한법률안」, 「기부금품모집금지법개정법률안」 및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 등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조금·출연금·기부금등의 재원을 독립된 「기금」등의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7)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과 사회적 보상체계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에, 이를 국가가 직접 개별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기 보다는 독립된 민간조직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확보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자원봉사활동수행중의 재해에 대한 보상금을 수혜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것 보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지원기구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보험제도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비용등의 지급도 수혜기관 보다는 위의 진흥·지원기구가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 록

1. 여야당의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 대비표
- 1-2. 보건사회부의 사회복지사업법개정법률안
2. 여야당의 민간운동지원에관한법률안 대비표
3. 기부금품모집금지법개정법률안
4.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

1. 여야당의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 대비표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당: 협동정신 함양, 지역사회발전, 복지증진 - 민주당: 자원봉사의 이념확산, 자원봉사활동의 건전한 발전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육성함으로써 국민상호간의 협동정신은 함양하고 지역사회발전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각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의 이념을 확산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지원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당: 봉사자의 자아실현, 공공이익의 증진 - 민주당: 더불어사는 사회구현, 자유로운 시민사회정착, 봉사자의 자아실현
제2조(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은 침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도우며 이웃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발전 및 공동복지 를 위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봉사자의 자기 실현 및 사회의 공공이익을 증진하는 이념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제2조(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은 봉사정신과 참여정신을 바탕으로 이웃과 공동체의 어려운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함으로써, 공동체적 연대감을 고취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 민간자율의 영역을 확대하여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정착케 하며 봉사활동참여자의 자아실현을 고양한다는 이념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에 따라 공익·복지사업의 수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에 따라 공익·복지사업 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당: 공직선거법상 공명선거추진 활동과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 포함. 다만 선거운동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p>이외의 반대급부없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활동을 말한다.</p> <p>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상담·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p> <p>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항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개인 및 비영리단체등을 말한다.</p>	<p>추진활동이나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을 말한다.</p> <p>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 알선,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단체는 이 법에 의한 자원봉사단체로 보지 아니한다.</p> <p>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p>	<p>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단체는 이 법에 의한 자원봉사단체로 보지 아니함.</p> <p>- 보건사회부안: 제2조제1항 및 제4항</p>
<p>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및 종류) ①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환경·교통·교육 등 지역 사회봉사활동</p> <p>2. 각종 사회복지와 국민보건</p>	<p>제4조(자원봉사활동의 종류와 그 범위) ①자원봉사활동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p> <p>2.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p>	<p>- 용어: 범위/종류 (?)</p> <p>- 민주당: 공명선거 추진과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소비자보호활동</p>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p>증진에 대한 봉사활동</p> <p>3. 범죄예방·청소년선도·재난관리·질서유지 등에 대한 봉사활동</p> <p>4. 기타 공익사업수행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p> <p>②제1항의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속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활동</p> <p>3.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p> <p>4.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p> <p>5.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p> <p>6.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p> <p>7.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p> <p>8. 재해구조에 관한 봉사활동</p> <p>9.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p> <p>1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p> <p>11. 제1호 내지 제8호와 관련된 해외봉사활동</p> <p>1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봉사활동</p> <p>②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제11호, 제12호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항제9호, 제10호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및 해외봉사활동 추가포함.</p>
<p>제5조(국가등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p>	<p>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확산하고 자원봉사자와</p>	<p>- 민주당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 명시</p>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을 높이고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p>자원봉사단체를 보호하여야 한다.</p> <p>②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요청에 응하여야 한다.</p>	
제6조(자원봉사의 중립성) 자원봉사활동은 정치적인 목적이나 자원봉사의 기본이념에 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 제6조제1항제1호	
	<p>제2장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기구와 감독</p> <p>제7조(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감독 체계) ①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와 제11호, 제12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감독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재단을, 제4조제1항제9호, 제10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감독하기 위하여 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회를 각 설립한다.</p> <p>②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자원봉사활동지원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명선거추진활동지원위원회를 각 설치한다.</p>	<p>-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감독기구: 자원봉사재단</p> <p>- 자원봉사활성화 및 업감독기구: 자원봉사활동추진위원회(국무총리실)</p>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p>③정부의 행정각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이하 같다.)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자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p> <p>④자원봉사재단의 업무와 정부의 행정각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 관련업무에 대한 감독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위원회가 담당하며, 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회의 업무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자원봉사활동 관련업무에 대한 감독은 공명선거추진활동지원위원회가 담당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업무 담당부서 지정: 행정각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선관위 - 재단 및 행정기관의 업무감독: 자원봉사활동지원위원회
<p>제7조(중앙자원봉사진흥위원회)</p> <p>①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정책수립, 봉사단체의 육성, 경력인정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중앙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p> <p>②제1항의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p>③중앙위원회위원장은 내무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p>	<p>제10조(자원봉사활동지원위원회)</p> <p>①자원봉사활동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부총리겸 경제기획장관을 부위원장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환경처장관과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p> <p>②자원봉사활동지원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와 제11호, 제12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정에 반영할 주요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이점 - 위원의 구성 - 담당업무 - 주무장관(내무/보사)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p>한다.</p> <p>④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자원봉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위원회의 조직·운영과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책, 자원봉사재단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재단에 대한 감독과 기타 주요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③자원봉사활동지원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공명선거추진활동지원위원회) ①공명선거추진활동지원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원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 공무원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등 민간분야에서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4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공명선거추진활동지원위원회는 제4조 제1항 제9호, 제10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정에 반영할 주요정책 사항과 공명 선거추진단체연합회에 대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원봉사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그러나, 공명 선거추진활동지원위원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회 또는 그 소속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자들</p>	
		- 민주당: 공명선거추진활동지원위원회(자원봉사활동지원위원회에 대응)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p>의 독자적인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p> <p>③공명선거추진활동지원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자원봉사단체협의회)</p> <p>①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협의회의 명칭, 조직, 운영,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p>	<p>제8조(자원봉사재단) ①자원봉사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②자원봉사재단은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위원회의 설립허가를 받은 후 제4항에 규정된 기구를 구성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p> <p>③자원봉사재단의 기본재산은 국민모금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p> <p>④자원봉사재단에는 이사회, 감사, 자원봉사단체대표자회의, 기금관리위원회, 사무처와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둔다.</p> <p>⑤이사회는 이사장 1인, 상임 이사 1인과 이사 7인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⑥감사는 2인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⑦자원봉사단체대표자회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p>	<p>- 자원봉사재단: 정부출연의 민간재단. 민자당의 국가·지자체의 업무에 대응.</p> <p>- 보건사회부안: 제31조(지원기관), 제38조(자원봉사단체협의회)</p> <p>- 재단의 기구</p> <p>- 자원봉사단체대표자회의 구성, 권한</p>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p>8호, 제11호, 제12호에 규정된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단체가 각 그 소속자원봉사자의 인원에 비례하여 선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고,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며, 의장과 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⑧자원봉사단체대표자회의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이사, 감사, 기금관리 위원장과 기금 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자원봉사재단의 정관 변경, 예산과 결산,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p>⑨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⑩기금관리위원회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자원봉사기금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p> <p>⑪사무처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지휘를 받아 재단의 서무를 담당하고, 사무처장 1인과 국·과를 두며 사무처장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p> <p>⑫자원봉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제11호, 제12호에 규정된 봉사활동을 하는 자</p>	<p>-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p> <p>- 자원봉사재단의 업무</p>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p>사단체와 소속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 소속하지 아니하고 위의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의 등록</p> <p>2. 제1호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자원봉사단체의 자체교육에 대한 지원</p> <p>3. 제1호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지도자의 양성</p> <p>4. 제1호의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자 배치에 관한 수급조정과 자원봉사재단이 직접 접수한 자원봉사지원요청서의 배분</p> <p>5. 제1호의 자원봉사단체가 제출하는 자원봉사활동경력증명발급신청서에 대한 조사·확인과 자원봉사활동경력증명서의 발급</p> <p>6. 자원봉사기금의 조성·관리와 기부금품 모집, 제1호의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금지원등 각종 지원, 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회에 대한 자금지원</p> <p>7. 제1호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여성, 청소년, 직장 은퇴자등의 자원봉사 참여 방법의 개발등 자원봉사활</p>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p>9. 제1호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국제자원봉사단체 등 과의 교류</p> <p>10. 기타 제1호의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감독에 필요 한 사항</p> <p>⑬자원봉사재단의 사무소는 수도에 두며,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 지방자치단 체에 지부를 둘 수 있다.</p> <p>⑭(정관의 기재사항) (각호 생략)</p> <p>⑮(자원봉사재단임직원의 겸 직금지)</p> <p>1. 공무원·단, 교육공무원 제 외</p> <p>2. 정당의 당직</p> <p>제9조(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 회) ①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 회는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 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②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 1항제9호에 규정된 봉사활동 을 하는 자원봉사단체가 각 그 소속자원봉사자의 인원에 비례하여 선출하는 대표자들 의 회의에서 대표자 정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정 관을 작성하고 공명선거추진</p>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p>활동지원위원회의 설립허가를 받은 후 제3항의 기구를 구성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p> <p>③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회는 이사회, 감사, 자원봉사단체대표자회의, 사무처와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둔다</p> <p>④(제8조제5항 내지 제8항, 제11항준용)</p> <p>⑤(연합회의 업무)(각호 생략)</p> <p>⑥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회의 사무소는 수도에 두며,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둘 수 있다.</p> <p>⑦(연합회정관의 기재사항)</p> <p>⑧(연합회임직원의 겸직금지)</p> <p>⑨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회에 소속된 자원봉사단체 대표와 사무책임자 기타 정관으로 규정하는 위 자원봉사단체의 임직원은 제8항 각호의 직 또는 지위를 겸임할 수 없다</p>	
제10조(자원봉사활동수칙) 중 앙위원회는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에 충실한 자원봉사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수칙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활동수칙) ①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치활동의 금지 자원봉사단체(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 민주당: 대가수수의 금지 명문화.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등) 자원봉사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등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자원봉사수요자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p>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 수행중에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에 대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자원봉사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비밀누설의 금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 또는 이에 종사하였던 자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사행활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p> <p>3. 대가 수수의 금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산상의 수익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자원봉사재단 또는 공명선거추진협의회로부터 이 법에 의한 실비 등을 받는 것은 대가 수수로 보지 아니한다.</p> <p>② 제1항제1호에서 정치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각 호 생략)</p>	
	제12조(국회의 감사·조사) 국회는 자원봉사재단과 공명선	- 민주당: 국회의 판여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p>거추진단체연합회의 업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p> <p>제13조(유사명칭 사용금지)</p>	
<p>제2장 자원봉사자의 등록 · 교육훈련 · 배치 등</p> <p>제12조(등록) ①자원봉사를 원하는 자 및 자원봉사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회 원으로 등록 할 수 있으며 등 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p> <p>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회원으로 등록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각종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제3장 자원봉사자의 등록, 교육훈련, 배치 등</p> <p>제14조(등록) ①제4조제1항제 1호 내지 제8호, 제11호, 제 12호에 규정된 봉사활동을 원 하는 자와 자원봉사단체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원봉사재단에 등록할 수 있다.</p> <p>②제4조제1항제9호에 규정 된 봉사활동을 원하는 자와 해당 자원봉사단체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명선거추진단체 연합회에 등록할 수 있다.</p> <p>③제4조제1항제10호에 규정 된 봉사활동을 원하는 자로서 1일 8시간이상의 봉사활동 (이하 '전일제 자원봉사'라 한 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당해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등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자원봉사자의 수는 당해 공직 선거후보자의 선거사무원수 의 5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p> <p>④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등록은 자원봉 사단체가 대행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처의 차이 - 민자당: 국가 · 지 자체 - 민주당: 자원봉사 재단 - 보건사회부안: 제 32조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p>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등록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이하 '등록자원봉사자', '등록자원봉사단체'라 한다)는 이 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제15조(자원봉사자 표지) ① 자원봉사재단은 제14조제1항에 의한 등록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회는 제14조제2항과 제3항에 의한 등록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원봉사자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발급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표지에는 해당 자원봉사활동을 홍보하는 내용의 도안, 사진, 구호 등을 표시할 수 있다.</p> <p>③ 제14조제2항과 제3항에 의한 등록자원봉사자가 아닌자는 선거기간중 공명선거추진 활동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자원봉사자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없다.</p>	
제13조(교육훈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제16조(교육훈련) ① 자원봉사재단과 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회는 등록한 자원봉사자에	· 교육훈련 주체 - 민자당 : 국가 · 자체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p>실시하여야 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교육훈련을 자원봉사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자원봉사재단과 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회는 제1항의 교육훈련을 자원봉사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③제1항과 제2항의 교육훈련에서는 제6조제2항이 규정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p>	<p>- 민주당 : 자원봉사재단</p> <p>- 보건사회부안: 제31조제1항제9조</p>
<p>제14조(자원봉사지도자 배치)</p> <p>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p>	<p>제17조(자원봉사지도자) ①자원봉사재단, 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회와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교육훈련, 지도, 평가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p> <p>②자원봉사지도자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에 대하여 제6조제2항이 규정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p>	
<p>제15조(자원봉사요청) ①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자원봉사수요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자의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원봉사자의 전공·소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수요자에게 가장</p>	<p>제18조(자원봉사자의 배치)</p> <p>①자원봉사재단과 소속자원봉사단체는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제11호, 제12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분야와 자원봉사수요자에 대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한다.</p> <p>②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회와 소속자원봉사단체는 제4조제1항제9호에 규정된 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선거</p>	<p>- 민자당: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단체</p> <p>- 민주당: 자원봉사재단, 자원봉사단체</p> <p>- 보건사회부안: 제33조</p>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적합한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p>구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한다.</p> <p>제19조(자원봉사 요청) ①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제11호, 제12호에 규정된 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재단 또는 소속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제4조제1항제9호에 규정된 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직선거후보자 또는 정당은 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회 또는 소속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제1항과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자원봉사재단과 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회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자의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원봉사자를 배치, 지원하여야 한다.</p>	
<p>제16조(자원봉사증서)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중 일정기간 이상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p> <p>②자원봉사증서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p>	<p>제20조(자원봉사활동경력증명서) ①자원봉사재단과 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회는 일정기간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p> <p>②제1항의 자원봉사활동경력증명서는 자원봉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속자원봉사단체</p>	<p>- 민자당: 국가·지자체, 자원봉사단체</p> <p>- 민주당: 자원봉사재단(자원봉사단체, 행정기관, 개인,단체의 확인)</p> <p>- 보건사회부안: 제36조</p>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령으로 정한다.	<p>(제4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는 당해 공직선거후보자의 사무장 또는 정당)의 확인과 자원봉사재단, 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회의 조사·확인을 거쳐 발급하여야 한다.</p> <p>③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제5장에 규정하는 각종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각 기관과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경력증명서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다.</p> <p>④자원봉사재단, 공명선거추진단체협의회, 자원봉사단체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각 기관과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제2항, 제3항의 조사·확인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수요자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p> <p>⑤자원봉사활동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기간과 기간합산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제11호, 제12호에 규정된 봉사활동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제4조제1항제9호, 제10호에 규정된 봉사활동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p>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p>제4장 자원봉사기금과 기부금 등</p> <p>제21조(자원봉사기금) ①자원봉사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재단에 자원봉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하는 현금, 부동산 기타 재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잡수입금중 이사회가 기금의 증액에 배정할 것을 결정한 금액. 이 경우 이사회는 기금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p>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2.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 3. 자원봉사자보험에 필요한 비용 4. 기금조성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 	<p>- 기금의 목적: 재단 운영과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p> <p>- 기금의 재원</p> <p>- 기금의 용도</p>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p>5. 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회 에 대한 지원금</p> <p>6.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에 필요한 비용</p> <p>제22조(기부금품 모집과 세제 혜택) ①자원봉사재단과 공 명선거추진단체연합회는 기 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p> <p>②자원봉사재단과 공명선거 추진단체연합회는 각 그 지부 로 하여금 기부금품을 모집하 게 할 수 있다.</p> <p>③이 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기부한 자와 기부를 받은 자 원봉사재단, 공명선거추진단 체연합회에 대하여는 조세감 면규제법 및 지방세법의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 세, 소득세와 증여세를 면제 한다.</p> <p>제23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후원금) ①등록한 자원봉사 단체는 자원봉사자 회원과 별 도로 후원회원을 두어 후원금 을 받을 수 있다.</p> <p>②등록한 자원봉사단체가 제 1항의 후원회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사재단, 공명선 거추진단체연합회에 신고하 여야 한다.</p>	<p>- 기부금품모집금지 법 및 사회복지공 동모금법안과의 관계</p> <p>- 조세면제</p> <p>- 기부금품모집금지 법과의 관계</p>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p>제3장 자원봉사활동지원</p> <p>제17조(보조금)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계획을 내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중앙위원회의 장은 제2항의 보조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당해 회계년도의 전년도 6월 20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5장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과 혜택 등</p> <p>제24조(보조금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재단 또는 그 지부에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 민자당:</p> <p>- 민주당: 자원봉사재단, 그 지부</p>
<p>제18조(국·공유재산의 우선 사용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가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p>	<p>제26조(국·공유재산의 대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재단이나 그 지부 또는 이에 소속된 등록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이나 그 지원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무상으로 또는 우선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p>	
<p>제19조(조세감면)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p>	<p>* 제22조제3항</p>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p>제20조(재해등에 대한 보상)</p> <p>①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수행중에 상처를 입거나 사망(상처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없이 불가피하게 타인에게 신체·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가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간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단체 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단체등 당해 자원봉사활동수혜기관의 부담으로 한다.</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과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자원봉사자 보험가입)</p> <p>자원봉사재단과 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회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등록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수행중 발생한 상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p>	<p>- 보상금의 재원:</p> <p>민자당: 수혜기관</p> <p>민주당: 보험</p> <p>- 보건사회부안: 제34조(자원봉사보험)</p>
<p>제21조(포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자의 교육·연구·진</p>	<p>제28조(포상)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공로가</p>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홍예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유사경력 인정)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력에 대하여는 유사분야에서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9조(유사경력 인정)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력에 대하여 유사분야에서의 유급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민자당: 근무경력 - 민주당: 유급근무경력 - 보건사회부안: 제37조
제23조(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혜택 등) ①자원봉사활동의 정착을 위하여 일정경력 이상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공직임용, 취업, 진학 등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받는 혜택의 기준, 범위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공직임용에서의 혜택)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기관은 일정 경력이상의 등록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공직임용시에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0호에 규정된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부여되는 공직임용에서의 혜택의 종류와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취업에서의 혜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경력 이상의 등록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취업심사에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32조(진학에서의 혜택) 각급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경력 이상의 등록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입학심사	- 공직임용시 혜택 민자당: 임의적 민주당: 의무적 - 취업 및 진학시 혜택: 임의적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p>에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제4조제10호에 규정된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제24조(실비 등의 지급) 자원봉사수혜기관 및 단체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p>제25조(실비 등의 지급) ①자원봉사재단, 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회와 그 각 지부 및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제4조제10호에 규정된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자원봉사재단, 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회와 그 각 지부는 제1항의 물품과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서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해당 자원봉사단체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주체 - 민자당: 수혜기관 - 민주당: 자원봉사재단, 자원봉사단체 - 보건사회부안: 제35조(지원기관)
제25조(자원봉사자의 날 등) ①자원봉사자의 봉사정신과 사기를 양양하고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날을 정한다. ②자원봉사자의 날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제33조(자원봉사활동의 교과과정 채택) ①정부는 자원봉사활동의 이론과 실습에 관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대학(전문대학을 포함)은 일정기간 이상의 특정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당: 초중고 교과과정 채택과 대학에서 학점 인정
제26조(국제교류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제34조(자원봉사주간의 설정)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p>활동의 국제교류를 총진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자원봉사 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국제교류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①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자원봉사주간을 설정한다. ②자원봉사주간의 행사는 자원봉사재단과 공명선거추진 단체연합회가 주관한다.</p>	
<p>제27조(등록취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행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증서를 허위로 기재·발급하거나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5.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지원 및 사회적 혜택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여받은 자 <p>제28조(별칙) 제11조의 규정</p>	<p>제35조(별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1항제1호와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 활동을 한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등록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자 3. 행사할 목적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자 4. 행사할 목적으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경력발급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 	<p>- 민자당: 비밀누설, 자원봉사증서의 허위발급 및 위조·변조만 처벌. 그 외는 자원봉사 단체의 등록취소.</p> <p>- 민주당: 별칙 강화</p>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위로 발급하거나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한 조사, 확인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자</p> <p>5.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허위기재 또는 허위 발급된 서류를 행사한 자</p> <p>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 또는 누설한 자</p> <p>2.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산상의 이익</p> <p>3.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원봉사재단, 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회의 명칭 또는 이와 동일한 단체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p> <p>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4조제2항과 제3항에 의한 등록자원봉사자 표지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허위발급된 자원봉사 표지를 사용한 자</p> <p>5.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자원봉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기</p>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간증 공명선거추진활동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자원봉사자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한 자	
제29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시행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제11호, 제12호에 규정하는 봉사활동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제4조제1항제9호, 제10호에 규정하는 봉사활동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봉사재단의 설립준비) 제3조(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 회의 설립준비) 제4조(한국국제협력단법과의 관계) ①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특정협력대상 지역에 파견되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재단에 자원봉사자등록을 한 때에는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경력증명서의 발급에 있어서 이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규정된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한국국제협	- 민주당: 한국국제교류협력단법에 의한 활동의 경력 인정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p>력단은 이 법 제18조제2항이 규정하는 자원봉사단체의 확인업무를 대행한다.</p> <p>제5조(자원봉사활동경력의 소급인정) 자원봉사재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경력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이전의 자원봉사활동과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특정협력대상 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p>	

1-2. 보건사회부의 사회복지사업법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정신병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을 “정신병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 · 사회복지자원봉사에 관한 사업 등”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이 법에서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반대급부없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27조제1항중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시 · 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 · 도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협의회”를 각각 “협의회와 시 · 도협의회”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제2호중 “제37조제1항”을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 다음에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장을 제5장으로 하며, 제31조 내지 제38조를 제39조 내지 제46조로 한다.

제4장 자원봉사활동

제31조(지원기관) ①보건사회부장관 및 시 · 도지사는 소관 법인중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

2. 자원봉사활동 신청 접수 및 지원 관리
 3.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4.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계몽 및 홍보
 5. 기타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②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지원기관의 지정과 사업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등록등) 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는 이 법에 의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자원봉사자 요청 및 배치 지원) ①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지원기관이나 자원봉사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지원기관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전공·소질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원봉사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의 요청 및 배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자원봉사보험) ① 지원기관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중에 입은 부상·신체장애 또는 사망등의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실비등의 지급) 지원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자원봉사증서) ① 지원기관은 일정기간 이상 계속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를 소지한 자는 필요한 경우 타인에 우선하여 자원봉사 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자원봉사증서 발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유사경력 인정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법인을 포함한다)·단체는 일정기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유사분야의 유급근무경력을 인정하거나 공직 임용, 취업, 진학등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경력 인정 및 혜택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자원봉사단체협의회) ①자원봉사활동 관련단체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상호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되, 제1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39조중 “제31조제2항”을 “제39조제2항”으로 하여 동조를 제47조로 한다.

제40조제3호중 “제33조”를 “제41조”로 하여 동조를 제48조로 한다.

제42조중 “제39조 내지 제41조”를 “제47조 내지 제49조”로 하여 동조를 제50조로 한다.

제43조중 “제38조”를 “제46조”로 하여 동조를 제51조로 하고, 제44조를 제52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여야당의 민간운동지원에관한법률안 대비표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설립한 각급 민간운동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설립한 각종 민간운동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운동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사회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운동단체를 보는 시각의 차이 - 지속성과 건전성 - 밝고 건전한 국가 사회건설과 시민 사회 정착
제2조(민간운동의 기본방향) 민간운동은 건전한 시민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민 모두의 자발적 참여아래 순수민간 주도로 추진되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민간운동의 기본방향) 민간운동은 건전한 시민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아래 순수 민간주도로 추진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민자당: 행정적 지원을 명시
제3조(정의) ①이 법에서 “민간운동단체”라 함은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 단체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 및 그 하부조직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을 갖춘 단체로 한다. 1. 제2조에서 규정한 민간운동을 수행하는 단체 2.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설립	제3조(정의) ①이 법에서 “민간운동단체”라 함은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 단체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 및 그 하부조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단체로 한다. 1. 제2조에서 규정한 민간운동을 수행하는 단체 2.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설립	- ‘민간운동’의 정의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p>된 단체</p> <p>3. 비영리·비정치성 단체</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적용단체에서 제외한다.</p> <p>1. 단체구성원 상호간의 친목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p> <p>2. 학술의 조사·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p> <p>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p>	<p>된 단체</p> <p>3. 비영리 단체</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적용단체에서 배제한다.</p> <p>1.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p> <p>2.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 또는 특정인을 지원하는 단체</p> <p>3. 단체구성원 상호간의 친목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p>	
<p>제4조(민간운동지원협의회)</p> <p>①민간운동 및 기금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민간운동단체의 지원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민간운동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련부처의 장, 제6조의 민간운동진흥재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 민간운동단체 대표 및 민간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p> <p>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p>	<p>제4조(민간운동지원위원회)</p> <p>①민간운동과 기금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운동진흥재단의 민간운동단체 지원대상사업의 선정과 지원금 교부 결정에 대한 승인, 기타 민간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민간운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민간운동단체의 대표 및 민간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실무를 관장할 상임위원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선출한</p>	<p>명칭: 협의회/위원회 위원장: 협의회/위원회 위원수: 21인과 15인 위원자격: 민주당안은 관련부처의 장과 민간운동진흥재단 이사장 및 이사를 배제</p> <p>위원선출: 국무총리의 지명 또는 위촉/국회의 선출</p> <p>위원회간사: 총리실 행정조정실장/위원장이 임명한 자 위원·간사의 겸직 금지: 민주당</p> <p>위원장: 국무총리/위원회에서 선출</p>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p>사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이 된다.</p> <p>⑤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한다.</p> <p>④위원회에는 실무간사 1인과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두며, 실무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p> <p>⑤위원회의 위원, 실무간사, 사무직원은 다음 각호의 직 또는 지위를 겸임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교육법 제75조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교원중 총장·부총장·학장·부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조제1항 단서 각호에 규정된 단체의 임·직원 <p>⑦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조(지역민간운동지원협의회) ①지역의 민간운동단체 지원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민간운동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5조(지역민간운동지원위원회) ①지역의 민간운동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의 민간운동단체 지원대상사업의 선정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에 대한 승인 기타 지역민간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p>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p>역민간운동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지역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민간운동단체의 대표 및 민간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당해 지방의회가 선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지역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실무를 관장할 상임위원 1인을 두며, 지역위원회에서 선출한다.</p> <p>④지역위원회에는 실무간사 1인과 약간명의 사무직원을 두며, 실무간사는 위원장이 지역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p> <p>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⑥지역위원회의 위원, 실무간사, 사무직원은 제4조제6항각호에 규정된 직 또는 지위를 겸임할 수 없다.</p> <p>⑦지역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제6조(민간운동진흥재단) ①민간운동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민간운동진흥재단(이하 “진	제6조(민간운동진흥재단) ①민간운동에 관한 다음 각호의 활동과 사업을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민간운동진흥재단(이하 “진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p>“홍재단”라 한다)을 설립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운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지원 민간운동진흥기금의 조성 · 배정 · 결산 민간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 · 연구 기타 민간운동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p>②진홍재단은 법인으로 한다.</p> <p>③진홍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진홍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기금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p>⑤진홍재단에 이사장1인 및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p>	<p>“홍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심사, 민간운동단체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운동진흥기금에서 민간운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비용으로 교부하는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결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 보고서 작성과 사업실적보고서 및 검토보고서의 위원회에의 제출 민간운동진흥기금의 조성 · 배정 · 결산 민간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 · 연구 <p>②진홍재단은 법인으로 한다.</p> <p>③진홍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진홍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p>⑥이사장 및 상임이사는 민간 운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민간운동지원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이사는 민간운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주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명제청시에는 공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⑦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p> <p>⑧이사장은 진홍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감사는 진홍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p> <p>⑨진홍재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p> <p>⑩진홍재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p> <p>⑪진홍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기금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p> <p>⑤진홍재단에 이사장 1인 및 실무를 관장할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이사와 감사1인을 둔다.</p> <p>⑥이사장 및 상임이사는 민간 운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민간운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주무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⑦진홍재단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p> <p>⑧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⑨이사장·이사·감사·사무처장 및 직원은 제4조제6항 각호에 규정된 직 또는 지위를 겸임할수 없다.</p> <p>⑩이사장은 진홍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감사는 진홍재단의 업무 및 회계</p>	<p>이사장·상임이사: 협의회위원장이 임명/국회에서 임명</p>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p>를 감사한다.</p> <p>⑪진홍재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p> <p>⑫진홍재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p> <p>⑬진홍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7조(기금) ①민간운동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운동 진홍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국내외 단체·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p>③기금은 제6조의 민간운동 진홍재단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한다.</p>	<p>제7조(기금) ①민간운동단체에 지원금을 교부하기 위하여 진홍재단에 민간운동진홍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국내외 단체·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제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p>③기금은 진홍재단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한다.</p>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④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등)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민간운동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의 비용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정부이외의 자는 민간운동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재원으로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등)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해 지역의 민간운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비용으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정부이외의 자는 민간운동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진흥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 기부금품모집금지 법과의 관계
제9조(조세감면) ①제7조제1항의 기금과 민간운동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민간운동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조성과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운동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 또는 기부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9조(조세감면) ①제7조제1항의 기금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조성과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운동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 또는 기부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민간 운동단체가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진홍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민간 운동단체가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당해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진홍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홍재단의 이사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와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민간운동단체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 말까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홍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민간운동단체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 말까지 사업실적보고서(이하 "사업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진홍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홍재단의 이사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실적보고서와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p>제12조(별칙)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교부된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p> <p>②교부받은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교부된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p> <p>제13조(별칙) 이 법에 의하여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의 임·직원 기타 구성원이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적용되는 선거의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민자당안은 별칙 없음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자당안	민주당안	비 고
<p>제2조(설립준비) ① 주무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4월안에 민간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③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인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p> <p>④ 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p>	<p>제2조(설립준비) ①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홍재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선출하고, 지방의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p> <p>② 국회에서 선출된 진홍재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정관작성과 기금조성을 완료하고 진홍재단의 이사회와 사무처를 구성하여 진홍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육성법 및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은 이 법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를 각각 폐지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p>	<p>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3.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p>- 민자당: 공포후 2년</p> <p>- 민주당: 시행 즉시</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 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13. 민간운동지원에관한법률(신설)</p>		

3. 기부금품모집금지법개정법률안

기부금품모집규제법안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비 고
<p>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금지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그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寄附金品”이라 함은 환영 금품 · 축하금품 · 찬조금품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 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p> <p>가. 법인 · 정당 · 사회단체 · 종친친회 · 친목단체 등이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등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 일시금 또는 정기적으로 각출하는 회비의 경우. 다만, 법인과 정당을 제외한 단체의 각출에 있어서는 정당한 입단수속을 완료한 자 1인당 연액 20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나. 사찰 · 교회 · 향교 기타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각출하는 금품</p>	<p>제2조 이 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左에 열거를除한 외에 의뢰권유 기타의 방법으로 무상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p> <p>1. 법인, 정당 기타 등록된 단체에서 정관이나 규약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또는 정기적으로 각출하는 회비의 경우. 다만, 법인과 정당을 제외한 단체의 각출에 있어서는 정당한 입단수속을 완료한 자 1인당 연액 20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2. 사원, 교회 기타 공인된 종교단체에서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금품을 취득하는 경우</p> <p>3. 학교기성회, 후원회 또는</p>	

기부금품모집규제법안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비 고
<p>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정당 ·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각출하는 금품</p> <p>라. 학교기성회 · 후원회 · 장학회 또는 동창회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각출하는 금품</p> <p>2.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서신 · 광고 기타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p> <p>3. “모집자”라 함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p> <p>4. “모집종사자”라 함은 모집자로 부터 지시 · 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p>	<p>장학회 등에서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 등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품을 각출하는 경우</p>	
<p>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 결핵방지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p>- 자원봉사단체, 민간운동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기부금품모집의 문제</p>

기부금품모집규제법안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비 고
<p>제4조(기부금품의 모집허가)</p> <p>①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3. 불우이웃돕기등 자선사업 4.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제3조 ① 누구든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죄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무부장관과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금품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액을 구휼하는데 필요한 금품 3. 국방기재를 현납하기 위한 금품 4. 현충기념시설의 설치와 자선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 5. 전국적 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금품과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을 위한 기금 6. 국제적인 반공기관의 설치를 위한 금품 7.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석할 선수의 파견을 위한 금품 <p>②전항의 도지사 및 서울특별시장의 모집허가와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5조(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제한) ①국가 또는 지방	제4조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의 환영금, 전별금 기타 축하금	

기부금품모집규제법안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비 고
<p>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p> <p>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등 여하한 명목의 기부금품도 모집할 수 없다.</p>	
<p>제6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p> <p>①기부금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금융기관 기타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p> <p>②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후 5일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 내역과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p>		

기부금품모집규제법안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비 고
<p>제7조(모집상의 의무) ①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때에는 모집허가서 또는 그 사본을 모집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②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액을 지역별 또는 집단별로 할당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고지서 또는 이에 유사한 문서를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을 위하여 집집마다 방문하여 모집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모집자가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모집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의 허기일자·허가번호 및 허가권자를 나타내어야 한다.</p> <p>제8조(모집결과 등의 신고)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모집을 중단 또는 종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7일이내에 허가권자에게 모집상황 및 그 결과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p>	<p>제6조 기부모집자 또는 그 종사자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허가지령서 또는 그 사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과대한 언사를 쓰거나 고지서와 유사한 문서를 발부하는 등의 강요행위를 할 수 없다.</p>	
제9조(모집비용 충당제한) 모집된 기부품은 모집비용에 충	제5조 기부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없다. 다만, 내무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안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비 고
당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모집금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모집금품의 100분지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에 충당할 수 있다.	
<p>제10조(검사등) ①허가권자는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 행위가 이 법이나 허가조건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관계서류·장부 기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자의 사무소·모금장소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p>	<p>제7조 내무부장관은 기부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부모집자로 하여금 서류, 장부 기타 사업보고서를 제출케 하며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임검 기타 실지 사무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p>	
<p>제11조(허가의 취소등) ①허가권자는 모집자가 이 법이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집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할 수 있다.</p>	<p>제8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모집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정지 또는 제한하고 모집된 금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기부금품모집규제법안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비 고
<p>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p> <p>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p>제13조(장부의 비치 및 공개의무) ①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②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한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p>	<p>제9조 기부모집자가 그 모집을 중지하고 모집된 금품을 처분하려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p>	
<p>제14조(권한의 위임) ①내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직</p>		

기부금품모집규제법안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비 고
<p>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p> <p>제15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자 2. 제7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집 		
<p>제10조 기부금품의 모집을 단속할 공무원이 이 법에 위반하는 사실을 지득하고 이를 둑인 또는 방임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1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행한 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2조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기부금품모집규제법안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비 고
<p>결과를 허위로 신고한 자</p> <p>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자</p> <p>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p>		
<p>제1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p> <p>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집허가서 또는 그 사본을 모집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p> <p>3. 제7조제4항에 위반하여 모금광고시에 허가일자·허가번호 또는 허가권자의 표시를 누락하거나 이를 허위로 게재한 자</p> <p>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p>	<p>제13조 ①이 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전항의 대통령령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십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p>	

기부금품모집규제법안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비 고
<p>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p> <p>5.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부과·징수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허</p>	<p>부 칙</p> <p>제1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본법 시행시에 기부통제법에 의한 허가를 얻어 계속</p>	

기부금품모집규제법안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비 고
<p>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허가를 받은 기부금품의 모집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p> <p>제3조(별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별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제1항중 “성금을 모집하여 통일축진기금”을 “통일축진기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p> <p>②유아교육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제1항중 “출연금 기타 기부금”을 “출연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p> <p>③국민체육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제1항제3호중 “부가모금액”을 “기부금”으로 한다.</p> <p>제22조제1항중 “부가모금의 모금액”을 “부가금”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p> <p>④제주도개발특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4조의 제목을 “관광진흥 자금의 조성”으로 하고, 동조 중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p>	<p>모집중에 있는 것은 본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본 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p> <p>제3조 법률제68호 寄附統制法은 폐지한다.</p>	

기부금품모집규제법안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비 고
<p>부금품모집금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자금을 조성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하며, “관광진흥 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다”를 “관광진흥부가금을 과징할 수 있다”로 한다.</p> <p>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 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 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p>		

4.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비 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社會福祉事業”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共同募金”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내용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을 단위로 기여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기부금품은 기부하는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동모금사업을 관리하는자는 공동모금의 목적에 맞도록 기부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모금회의 설립) ①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하기 위	제2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 구법: 사회복지사 업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비 고
<p>하여 중앙공동모금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국단위의 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3. 지역단위의 공동모금사업의 업무 조정 <p>②지역단위의 공동모금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공동모금회를 둔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동모금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라 한다)는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p> <p>④중앙공동모금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역공동모금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5조(공동모금회의 임원) ① 공동모금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어야 한다.</p>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비 고
<p>②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보충을 위하여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p> <p>③회장은 공동모금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④임원의 선출방법 및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공동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p> <p>제6조(공동모금회의 조직·운영) ①공동모금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공동모금회에 이사회를 둔다.</p> <p>②공동모금에 관한 기획·홍보·모금·배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③공동모금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재원의 조성) 공동모금 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2. 기타 수입금 	<p>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이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 기타의 수익금 	- 재원·기금의 조성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비 고
<p>제8조(재원의 사용)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사업으로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제1호의 사업외의 사회복지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비용 	<p>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비용 3. 제1호의 사업 이외의 사회복지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4. 기금의 조성 및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비용 	
<p>제9조(재원의 관리·운용)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공동모금회가 이를 관리·운용한다.</p>	<p>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p> <p>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여 사회복지사업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관리운용의 주체
<p>제10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공동모금모금회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모집계획에 관하여 중앙공동</p>	<p>제7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기금의 효과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p>	- 기부금품의 모집 주체와 절차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비 고
<p>모금회의 조정을 거쳐 기부금 품모집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중앙공동모금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신청 15일전에 그 내용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 한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과 협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기관의 지정요건 및 모집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모집기관은 모집한 기부금 품(기탁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을 지체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p>	
제11조(기부금품의 지정사용) 공동모금회는 기부자가 사용 용도 또는 수혜대상자를 지정 하여 금품을 기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정취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공동모금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3조(사업계획의 제출등) ① 공동모금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보건사회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연도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배분결과의 공고등) 공동모금회는 모집된 기부금품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비 고
<p>의 배분을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세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5조(공동모금회 상호간의 관계) ①중앙공동모금회장은 매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각 지역공동모금회로 부터 사업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종합보고하여야 한다.</p>		
<p>②중앙공동모금회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공동모금회장에게 사업의 조정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공동모금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중앙공동모금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의 일정비율을 지역공동모금회에 지원할 수 있다.</p>		
<p>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동모금회가 아닌 자는 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한다.</p>		
<p>제17조(보조금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모금회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비 고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p> <p>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모금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詐偽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p>제18조(포상) 정부는 공동모금사업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p>	<p>제9조(敍勵) 기금조성에 공헌을 한 자에 대하여는 상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훈을 할 수 있다.</p>	
<p>제19조(지도·감독등) ①보건 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동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비 고
	<p>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p> <p>②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p>	
제20조(시정명령등)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동모금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제출, 조사,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당해 공동모금회장에게 임직원의 해임 또는 改選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비 고
부 칙	부 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지법률)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p> <p>제3조(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수립된 1995년도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p>	<p>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p>	

현안분석 94-3 自願奉仕活動의 活性化를 위한 立法方向

1994년 12월 25일 印刷

1994년 12월 30일 發行

發行人 張 明 根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주) 한국컴퓨터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전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本院의 承認 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500 원

